**일러두기**

*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 등)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해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10종을 제·개정, 고시(21.2.22.)하였습니다.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1년 발행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을 편집해서 옮겼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대화문은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이 책을 편집하면서 해설서 내용을 대화문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또한 단어의 이해를 돕는 해설박스를 삽입하고, 각주 형식 변경 및 해설 부분을 윤문으로 처리했습니다.

* 본 해설서는 FSC 인증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표지: 삼화제지 랑데뷰 210g
내지: 홍원제지 미색모조지 100g

# 출판 분야
# 표준계약서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CONTENTS


## 1장.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01. 출판권 설정계약서 7
0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47
0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71
0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95
0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113
0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127

## 2장.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0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141
02.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159
03.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173
04.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 183

참고문헌 195

표준계약서 Q&A 197

# 1장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01

# 출판권 설정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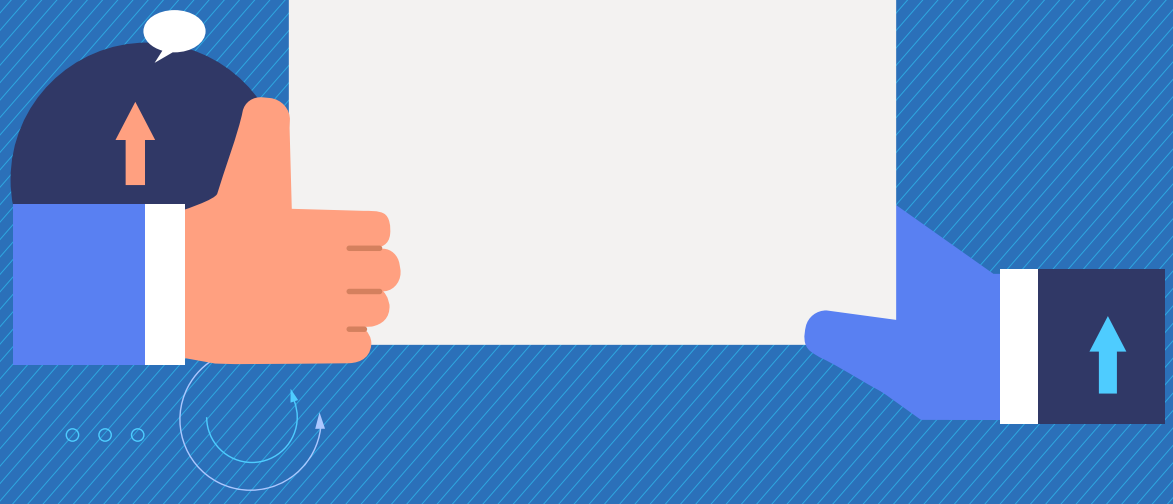

출판권 설정계약서란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책을 인쇄해서 발행할 권리를 주는 계약이야. 그러면 출판사는 그 책을 종이책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돼. 이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서, 출판사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책을 발행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하면 돼. 그러면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출판사는 작가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도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

맞아. 출판사는 저작물 창작에 관여한 여러 사람과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출판사)에 대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가 어문저작물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출판권 설정계약서*

| | | |
|---|---|---|
| 저작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이명(필명) : _____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_____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출판권 설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다르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설정 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출판권 설정은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전자책(e-Book)이나 오디오북 등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7.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재이용 및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출판권 계약을 맺을 때, 용어 정의 규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

왜 중요한데?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 서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거든. 그리고 분쟁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 않아?

맞아.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어서, 비교적 중요한 개념들만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지.

제3조는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설정(設定)'이란 쌍방의 계약에 의해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등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판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흔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관련 조항을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한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곧 출판허락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와 설정출판권이 갖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똑같은 '출판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4쪽.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는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야. 여기서 '설정'이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만들어내는 걸 말해. 출판권도 이런 설정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저작권법에 나오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관련 조항이랑 뭐가 다른 거야?

좋은 질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을 그냥 출판업계에서 흔히 이용하는 출판허락계약이랑 같다고 생각해. 그런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고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해.

출판허락계약이랑 출판권 설정 계약은 뭐가 다른데?

출판허락계약은 저작재산권자가 그냥 출판할 수 있는 권리, 즉 여러 출판사에 똑같은 출판권을 줄 수 있는 채권적 권리야. 반면에 출판권 설정계약은 오직 한 출판사에만 출판권을 주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이지.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출판권 설정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곧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 대상 저작물을 출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다만,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출판권 설정의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거야?

아, 출판권도 등록 대상이 돼서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이중으로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맺었을 때, 다른 출판사가 이를 출판하지 못하게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해.

그렇다면 출판권 등록이 꼭 필요한 거네?

꼭 그런 건 아니야.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야.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즉,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대상 저작물을 출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이 조항이 있는 거야?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거야. 다만, 계약서 말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면 이 조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아, 이해했어. 고마워!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출판사의 **'배타적 이용'**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출판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제5조 출판사의 '배타적 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을 말하는 거야?

제1항에 따르면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출판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만 이용해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

그렇다면 만약에 출판물이 '시집'이나 '소설집'처럼 일부만 이용해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런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해도 문제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제2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제2항에서는 개정판이나 증보판을 다른 곳에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판사 이외의 사람이 발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출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정판이나 증보판을 내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제2항에서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다른 곳에서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판사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일로부터 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출판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판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한다. 여기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양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

아울러 이러한 출판권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주로 출판사가— 재고 등을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2항에서처럼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물론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약이 없을 경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해. 양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해.

계약기간이 지나면 출판권은 어떻게 돼?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 하지만 갑작스러운 계약 만료로 출판사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제2항에서는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어. 제3항에 따르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일정 기간 연장돼.

어느 한쪽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그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이 종료돼.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언제까지 출판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완전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제1항에서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즉,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출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의 '출판'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일반서점에 진열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 출판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출판사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된 기간 내의 출판 이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원고가 약정된 기일 안에 출판사에게 인도되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출판사나 편집자의 원고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일 안에 원고가 인도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작권자의 원고 인도 의무를 별도의 법조문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독일 ‘출판권에 관한 법률’ 제10조).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출판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제3항은 원고(원화)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원고가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原畵) 등과 같은 실물 원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제4항에서는 완전원고의 판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 출판 실무에 있어 살펴보면 실제로 한 권짜리 시나 소설 또는 에세이를 모아 만드는 단행본은 완전원고 입수 후 일주일 또는 한 달 만에 출판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특수한 백과사전 등은 완전원고가 입수되었더라도 그림이나 사진 등 자료의 배치와 내용 수정 등으로 인해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 출판 시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

출판사는 완전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쌍방이 협의해 출판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출판의 의미는 단순한 복제와는 다른 거야?**

출판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서점에 진열되어 독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 서로 약정한 출판 시기는 출판사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

**원고 인도에 대해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약정된 기일에 출판사에 인도돼야 해. 일부 나라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약 성립 시 원고 인도를 전제해.

**원고 반환에 대한 조항도 있네?**

제3항은 원고 반환에 관한 조항이야. 대부분의 원고가 이메일로 주고받지만, 실물 원고는 보존적 가치를 고려해 반환할 수도 있어. 이 조항은 원고 특성에 따라 협의해 결정하면 돼.

**완전원고의 판단은 어떻게 해?**

완전원고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은 해제돼.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권자 등에게도 출판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이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출판사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해. 만약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저작권자가 져야 해. 제1항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

고지 의무? 꼭 해야 하는 거야?

제2항에서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계약의 완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야.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의무는?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완전한 저작물을 출판사에 인도하여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 뭐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야.

저작인격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로 나뉘어.

각각의 권리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공표권은 저작물이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를 결정하는 권리야.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야.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도 규정해?

맞아.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비재산권이고,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 행사는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公表權)**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기가 작성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인지, 공표를 한다면 배타적발행, 출판 또는 연극, 영화, 방송, 전송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표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한편, 이러한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한해서 단 한 번밖에는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표가 저작

물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저작물이 공표된 후라면 공표의 방법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표권은 뭐야?

공표권은 저작물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를 저작자가 결정하는 권리야.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어떻게 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공표권 침해야.

공표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어?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한해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한 번 공표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공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표시권이 뭔지 알아?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구나.

맞아, 그뿐만 아니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저작자를 명시해야 해.

아, 그럼 내가 만든 작품을 누가 사용할 때 내 이름을 빼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네.

정확해! 그건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야.

이해했어. 결국, 저작자의 이름을 제대로 표시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저작자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곧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은 물론 형식 및 제호 등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저작물에 구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완전성 혹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저작물의 일부를 없애거나 고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자(誤字)나 탈자(脫字)를 고치는 것은 예외이다. 여기서 내용 혹은 형식의 변경이란, 저작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단으로 주제를 변경하고자 전개과정을 바꿈으로써 원작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장인물 또는 배경 따위를 바꿈으로써 마찬가지로 원작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거나 시를 소설로 바꾸는 것처럼 표현형식 자체를 고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다만, 번역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誤譯)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사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호(題號)의 문제가 있다. 제호란 저작물의 제목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면 저작자에게는 사실상의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만을 위해 제호를 무단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원래 제호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저작자의 제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저작권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인데, 만약에 모든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면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랑'이란 제목으로는 저작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보다는 일부에 의한 독점현상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제호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제호에 한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저작물의 내용과 어울릴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5조 참조).

** 제호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저작물이 복제된 출판물을 예로 든다면 출판물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인 제호라면 산업재산권에서의 상표로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만든 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야. 쉽게 말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을 누가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구나.

맞아. 예를 들어, 소설의 내용을 바꾸거나 캐릭터를 변경하는 것처럼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고치는 건 안 돼.

그럼 오타를 고치는 건 괜찮아?

오타나 탈자 같은 단순한 수정은 괜찮아. 하지만 내용이나 형식을 크게 변경하는 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제호, 그러니까 제목도 보호되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해. 하지만 매우 독창적인 제목이라면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오케이! 결국, 저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네.

맞아, 저작자의 의도와 저작물을 잘 보존하는 게 핵심이지.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고,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慰藉料)'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는 그러한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드러난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아는 어느 이용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이용했다면—예를 들어, 저작자의 이름을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출판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개작하여 외설물로 둔갑시키는 등— 원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제2항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인 권리야.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인격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돼?

저작자가 직접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저작자가 죽으면 인격권도 사라져.

저작자가 죽었는데도 누가 저작물에 해를 끼치면 어떻게 돼?

형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이나 상속자가 침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의 인격권은?

공동저작물의 인격권은 모든 저작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어. 대표를 정해서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대표의 권리에 제한이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작자의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네.

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상속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저작물로서 그것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음악에 있어서 작성자가 서로 다른 작사 부분과 작곡 부분을 각기 가사집과 경음악 디스크 또는 파일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15조에서는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작자 전원이 합의(合意)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념상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합의에 따라 다수결이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신의(信義)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의에 반하여"란 의미는 "사전에 뚜렷이 합의하지

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의 작성 목적, 저작인격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을 책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의 다른 출판사를 고집한다면 공표권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작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즉, 저작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의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서 대표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행사한 대표권이 저작자들 내부의 제한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자들끼리 인세(印稅)로서 출판물 정가의 10% 이상이면 이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표자에게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서에 실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인세가 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인 출판사가 저작자들끼리 인세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자만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자들끼리의 내부합의와는 상관없이 계약 상대방을 선의로 해석해서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내부의 합의사실을 알고서도 대표자를 설득하거나 매수한 끝에 맺어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악의적인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물론 저작자 내부에 가해진 제한으로서의 합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다.

*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서울:진원사), 55쪽.

- 공동저작물은 두 사람 이상이 만든 저작물인데, 그들의 저작 부분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걸 말해.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이 있어. 이걸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야. 또, 노래에서 작사와 작곡 부분을 따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결합저작물이지 공동저작물은 아니야.

- 그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해?
-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해.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무조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 만약 한 사람이 합의 성립을 방해하면, 다른 저작자들만의 합의로도 가능해.
- 예를 들어줄 수 있어?
-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하는데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출판사를 고집한다면, 다른 저작자들만의 합의로 출판할 수 있어.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정할 수 있나?
- 응, 저작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서 대표자를 정할 수 있어.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서 대표자를 두면 그 사람이 저작인격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
- 만약 대표자가 계약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 만약 대표자가 내부 합의에 어긋나게 계약했어도, 계약 상대방이 그 내부 합의를 몰랐다면 그 계약은 유효해. 예를 들어, 저작자들끼리 인세를 10% 이상 받기로 했는데, 대표자가 8%로 계약했다면, 출판사가 그 내부 합의를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해. 하지만 출판사가 그 합의를 알고도 대표자를 설득하거나 매수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 내부 합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어떻게 입증해?
- 그건 별개의 문제야.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제 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저작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출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네.

맞아.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이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거지.

음... 저작자가 아닌 단순 저작권자는 어떻게 해?

저작자와 확인하는 과정을 저작권자가 진행해야 해. 저작권자가 저작자와 상의해서 교정을 진행해야 하는 거야.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럴 때는 출판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출판사에 전문 편집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작자가 확인을 해야 해.

그러니까 출판사가 교정을 도와줘도 마지막에는 저작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네?

맞아. 저작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출판사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저작권법 제58조의2를 준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쇄(重刷) 또는 중판(重版)의 경우는 저작물에 수정이

관계법령

**저작권법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증감을 해도 출판사에게 별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출판사로 하여금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출판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출판사의 부담 정도, 그리고 출판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출판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출판사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사가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했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면 출판사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는 없다. 그 밖에 출판사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3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출판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출판사에서 출판물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판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출판(自費出版)'의 경우에는 저작 및 출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출판권 설정계약인 경우 제3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4항은 제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출판사로 하여금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출판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4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수정하면 출판사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쇄나 중판하면 어떻게 돼?

출판사는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해. 예외는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특약이 있을 때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눠?

저작물 완성 비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과 판매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출판 시기를 놓치거나 손실이 생기면?

그런 경우 부담액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2조는 **'저작권의 표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의 또 다른 의무는 복제권자를 표지(標識)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작권법 58조 "복제권자를 표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출판권자에게는 출처 명시 위반의 죄와 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8조 참조). 따라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제12조는 '저작권의 표지 등'에 관한 조항이야.
- 출판권자의 의무 중 하나가 복제권자를 표지해야 하는 거지?
- 맞아.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대. 저작권법 제138조에 나와 있어.
-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복제권자를 표지해야 하는 거구나?
- 응,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

**저작권법 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표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처 명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복제권자를 표지할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내 복제권자의 검인첩부(檢印貼付), 즉 검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붙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 출판사에게는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작업상의 번거로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에 저작권자로서는 자기 저작물이 얼마나 출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용한 제도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는 양쪽의 견해를 절충하여 특약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표지는 물론 검인

의 첩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57년 제정된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출판권자가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1987년에 전면 개정하면서 절충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검인첩부제도는 1901의 독일 출판권법에서 출판권설정제도와 함께 검인제도를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이 이를 도입하여 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은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검인제도만큼은 삭제되었다.

복제권자 표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 출처 명시 규정을 준용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럼 검인첩부, 즉 검인지를 붙여야 하는지는 논란이 되겠네?

맞아. 출판사는 불신을 조장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자는 자기 저작물이 얼마나 출판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특약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표지와 검인 첩부를 생략할 수 있어.

**제13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중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사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는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의 관행은 앞의 제11조 제3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그리고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다만, 출판물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인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제3항의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 출판계에서는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과 판매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는 원칙이 있지. 그래서 정가, 판형, 제책방식, 중쇄 시기, 홍보·광고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해 왔어.

근데 저작권자도 자기 저작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하지 않나?

맞아. 그래서 저작권자가 의견을 내면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

홍보나 광고 과정에서 문제될 건 없어?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해야 해.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_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계속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저작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돼서 품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네?

출판사의 입장을 고려한 거야. 그냥 계속 출판해야 한다고만 하면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는 거니까.

판매가 안 된다면?

6개월 동안 판매량이 일정 부수를 못 채우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결국, 독자들의 수요가 있어도 저작권자와의 불화로 출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면, 출판사가 계속 출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 일반적인 출판 관행을 따르는 거지.

제14조는 **'계속 출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출판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출판사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출판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책을 출판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반품에 의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절판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출판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판매량이 일정부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독자들의 구매 욕구가 매우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출판물을 유통시키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상황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인 출판관행에 따라 계속출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판매부수 (  )
■ 기타 _____
_____

제15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들에게 있어 출판권 설정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세(印稅)'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저작권사용료'이다. 이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가리키는 말로, 유형물(도서)에 매겨

② 출판사는 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사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제15조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조항이야.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저작권사용료는 뭐야?

'인세'라고도 불리는데, 책의 정가에서 일정 비율로 계산돼. 발행부수나 판매부수에 따라 결정돼.

왜 저작권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생겨?

비율이나 지불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

이런 문제가 최근에 생긴 거야?

아니,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야. 출판계약에 항상 저작권사용료 내용이 들어가니까 분쟁이 생기기 쉬웠지.

저자가 여러 명이면 문제가 더 생기겠네?

맞아. 그래서 출판계약서가 매우 중요해.

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사용료의 비율과 지불 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을 놓고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잠재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출판계약이든 거기에는 항상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두고 언제든지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관행들은 대개 과거부터 출판계약에 있어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지불 방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인세율과 지불방법이 정해지거나, 저작권사용료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편집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처럼 다수의 저자를 상대로 할 때에 자칫 일어나기 쉬운 오해와 분쟁의 가능성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출판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저작권사용료의 산정과 지불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분쟁의 일차적인 원인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책으로 낼 만한 원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고정 독자층을 갖고 있는 유명저자를 섭외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율의 저작권사용료를 약속하거나 고액의 선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책을 출간하지만 이후 그것이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이한다거나, 처음에는 흥행 가능성이 희박한 무명저자였기에 저작권사용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은 비율의 저작권사용료 지불을 전제로 하여 출간해 준 저자가 이후 유명해지는 바람에 쌍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저서만 출간해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되자 무리하게 출판사를 옮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계약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 저작권사용료(인세) 지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서울:도서출판 이채), 35~53쪽 참조.

### 참고 저작권사용료 산정 및 지불 방법

① **발행부수에 따른 선지불 방법** : 도서의 정가를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재산권자에게 도서가 발행되기 전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대개 유명저자와 이것의 흥행에 자신 있는 출판권자 사이에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른바 저작재산권자의 '검인지'를 붙이는 것도 이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쌍방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가 없는 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일면 저작재산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투기나 다름없어서 무리한 광고 또는 판촉 경쟁을 불러와 결국에는 양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② **발행부수에 따른 후지불 방법** : 일단 출판계약을 했음에도 계약금 형식의 선지급금 없이 먼저 도서를 발행한 후 일정 기간 안에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중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는 대개 저자가 그 방면의 초보로서 출판사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이거나, 이후 발행부수에 대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사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높을 수 있다.

③ **발행부수에 따른 선지불 및 후지불 방법의 절충형** : 초판 1쇄에 한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발행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먼저 지불하고, 그다음부터는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양자 사이에 신뢰도가 낮다면 성공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저작자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는 울상을 짓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 결국 아전인수식 해석만 남기 때문이다. 그 지불 시기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④ **판매부수에 따른 후지불 방법** :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사용료는 후지불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입장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임으로써 예상 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출판사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필수적인 것은 출판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점별 주문 및 수금 양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혼합한 절충형** : 출판은 대개 출판사의 주도적인 기획 아래 진행된다. 따라서 출판의 결과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저자보다는 출판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 한 권 분량의 원고를 갖고 있거나 일정한 기일 안에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저자에게 출판사가 먼저 접근해서 출판을 권유했다면 일단 출판사는 도서 판매에 따른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혼합한 방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자가 약정한 일정의 발행분 또는 초판 1쇄에 대해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작권사용료를 출판사에서 먼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고, 이후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15조와 이어지는 제16조 '선급금'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에 해당한다.

⑥ **저작권사용료 기준비율의 누진(累進) 또는 누감(累減) 적용 방법** : 발행부수든 판매부수든 관계없이 그 비율을 확정해 놓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먼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만 부까지는 5%, 이후 3만 부까지는 8%, 이후 5만 부까지는 10%, 그 이상은 12% 등으로 점점 그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반면에 그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이른바 '누감세'의 방법도 있다.

제2항에서는 발행(또는 판매) 부수 통보 기일에 관한 약정 및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3항은 저작권사용료 면제 상황에 대한 조항이다. 발행부수 기준의 저작권사용료 지불방법이라 하더라도 납본을 포함하여 신간 안내, 서평, 그 밖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는 전체 발행부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수를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제 부수의 활용 내역을 알려주는 일 또한 출판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제16조 (선급금)**

① 출판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정한다.

③ 출판사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선급금은 곧 이 약정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통상적으로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 또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2항에서는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제3항에서는 이후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6조는 '선급금'에 관한 내용이야. 선급금은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 지불되는 돈이야. 보통 초판 제1쇄 발행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 또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2항에서는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

그럼 선급금은 저작권사용료와 다른 거야?

아니, 제3항에 따르면 이후 지급될 저작권사용료에서 선급금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부, 중쇄 발행 시 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초판 또는 개정판이나 중쇄를 발행함에 있어 그때마다 출판사에서는 출판된 도서를 일정부수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부수는 양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초판 1쇄보다는 중쇄의 경우에 그 부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저작권자가 더 필요한 부수가 있을 경우 이를 서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7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에 관한 내용이야. 출판사가 초판, 개정판, 중쇄를 발행할 때마다 일정 부수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하는 거지. 그 부수는 양쪽이 정하기 나름이고, 초판보다는 중쇄 때 줄어들 수도 있어.

저작권자가 더 많은 부수를 원하면 어떻게 해?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더 필요한 부수가 있으면 서점에서 정가로 사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어.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이는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원저작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2차적저작물로 활용되려면 우선 원저작물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한다. 출판이야말로 바로 원저작물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출판사에서 펼친 각종 홍보 전

제18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내용이야. 원저작물을 번역, 각색 등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해. 이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어.

출판사와 관련된 내용은?

출판사는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이용 요청이 오면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해. 출판사가 아닌 저작권자가 이 권리를 갖고 있거든.

원저작물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정 도서의 일부를 다른 도서나 잡지에 재수록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권리를 갖고 있어. 출판사는 요청이 오면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해.

실무적인 부분은?

2차적 이용이나 부차적 이용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이때는 서로 합의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

략과 실천이 그 원동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도 2차적저작물 작성 또는 재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보내오는 곳이 출판사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출판사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제1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다. 특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은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제 19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는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저작자 사망 이후에 관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제19조에서는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출판계약 기간 중에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출판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저작물을 수록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장 수요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출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19조는 무슨 내용이야?

제19조는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이나 편집물에 수록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여기서는 미리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건 해당 출판물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9조에서는 저작자가 살아있든 사망했든 관계없이, 출판계약 기간 중에 자신의 저작물을 전집이나 선집에 수록하려면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제20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이 준용되는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출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출판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그럼에도 만일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출판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출판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출판사가 자신의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20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출판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저작권자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맞아, 저작권자는 출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게 문제없어. 하지만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출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건 불가능해.

제1항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준 저작물의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출판사에게 통보해야 해.

제2항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해.

**제21조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21조는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도서 형태의 출판물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표지 및 본문에 대한 교정·교열 및 편집디자인이 반영된 판면(版面), 즉 인쇄를 위한 또 다른 원고(原稿)로서의 판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출판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출판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작권과 어울려 도서로서 독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판면파일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판면파일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또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전자책(e-Book) 제작을 저작권자가 별도로 진행하여 출판사가 제작한 판면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자책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1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출판사가 제작한 판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그런 경우 판면파일 매수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별도의 서면 또는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출판사에게 판면파일 구매에 관한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동반자로서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판면파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합의해야 할 조항이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는 거지?**

맞아. 하지만 책으로 출판하려면 표지나 본문에 교정, 편집디자인이 들어간 판면파일이 필요해. 이건 출판사가 만든 거라 소유권은 출판사에 있어.

**출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

계약이 끝나면 판면파일의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돼서 판면파일이 쓸모없어질 수도 있어.

**계약 중에는?**

계약 중에는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전자책을 저작권자가 만들 때, 출판사가 만든 판면파일을 쓰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저작권자가 원하면 출판사가 만든 판면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1항의 내용이야.

**비용은 어떻게 정해?**

제2항에 따르면, 판면파일 매수 비용은 별도의 서면이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이 조항의 목적은 뭐야?**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면파일의 재활용을 통해 쓸모없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지.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제23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제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이나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

**제23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

제23조에 따르면,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어.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출판사가 출판을 포기하면?

출판 의사가 없거나 출판이 어려운 상황이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해지와 해제는 어떻게 달라?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없애고, 해제는 소급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해지권은 언제 생겨?

계약에 존속기간이 없으면 쉽게 생기지만, 기간이 있으면 특정 요건이 필요해.

해지나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쳐?

둘 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이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의 손해금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저작권 등의 침해를 그 원인으로 하며, 저작권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침해정지 및 예방의 청구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된 다음,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발생 요건은 첫째, 침해행위 당시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할 것, 둘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건, 곧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귀책사유(歸責事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권리침해에 따른 위법성이 있을 것, 넷째,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 다섯째, 권리침해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를 피해자 측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괄호 안의 단서로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를 뜻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해배상이라는 차원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127조의 "명예회복 등의 청구"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위자료(慰藉料)'의 청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인격권 이외의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금액으로 추정한다는 뜻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익액과 손해액이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자 측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든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입증보다는 이익액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즉, 저작물의 무단이용 이후 늘어난 자본 또는 외형상의 성장을 근거로 침해자의 이익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영리 수준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액의 기준이 아닌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추정규정에 불과하므로 침해자가 다른 증거에 입각해서 이익액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이 규정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통상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무단이용에 따른 통상의 산출에 근거한 것으로, 관행으로서 존재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서의 인세나 원고료, 출연료 등의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일 인세가 10% 수준인 단행본 1만 부를 5천 원의 가격으로 무단출판한 사람에게는 그 인세액인 5백만 원을 손해액으로 삼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손해배상이 뭐야?**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메워주는 거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배상해?**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손해액을 추정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손해를 기준으로 해. 저작인격권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어.

**통상 금액은 뭐야?**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통상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어.

**손해가 더 크면?**

초과 손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등록된 저작권은?**

침해 시 과실이 있다고 추정돼. 등록해 두는 게 좋아.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야.

한편, 제1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액에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고, 그것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최저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단 복제물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권리를 직접 행사했을 경우에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보다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은 추정규정으로서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적용시키기 어렵지만 제2항은 법정규정으로서 자칫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최저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의 손해배상액으로 삼게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겠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의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추정할 수 없고 다만 제2항에 의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출만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했더라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것이 곧 초과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판권의 경우 침해자가 '갑'이라는 출판사라고 했을 때, 만일 훨씬 규모가 크고 유통망이 잘 갖추어진 '을'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저작물을 출판했더라면 과거의 전례로 보아 2만 부는 팔 수 있었을 것을 '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5천 부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차이가 나는 1만 5천 부만큼의 저작권사용료가 곧 초과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된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즉, 등록된 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과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 내용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향후 원만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손해배상의 청구 외에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이득"을 말하며, 이런 경우에 손실자에게는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이득자가 그 이득에 관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안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이득에 관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는 그 이득의 현존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동일한 사실이 두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권리침해의 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4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4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23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희롱 같은 피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응,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피해 구제 방법도 계약서에 적어놨어.

제25조는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이 준용되는 현행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위의 규정처럼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출판사는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출판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출판사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부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했는데 출판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중 1,500부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작권자 몰래 그 이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저작권법 제61조에서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책을 계속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응,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야?

첫째, 출판권 설정 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야. 예를 들어, "출판사는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남은 책을 계속 팔 수 있다"라고 약정하면 돼.

그러면 계약할 때 미리 그런 약속을 해야겠네?

맞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미리 그런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어.

다른 방법도 있어?

응, 출판권이 유지되는 동안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야. 예를 들어, 출판사가 책 3,000부를 인쇄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1,500부가 남아 있다면 그 책을 계속 배포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출판권 소멸 후에 더 많이 인쇄해서 나누면 안 되겠지?

맞아, 그렇게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출판권이 소멸되기 전에 제작한 것만 배포할 수 있어.

제26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땐 서로 책임 면제하고, 후속조치는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7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에서는 출판사가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용이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서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취급해야 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제2항에서는 출판사가 출판물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해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출판사는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네?

응, 맞아. 그런데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범위를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부분은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겠네.

그렇지. 서로 협의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

**제2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9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럴 땐 관련 법률이나 일반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해 놨어.

아, 그런 규정이 있구나.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30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調停)'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시킴으로써 '화해(和解)'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대개 소액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무리가 많은 까닭에 당사자끼리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조정은 분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공개적인 소송에 비해 비공개 상태에서 화해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조정을 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에 앞서 전문기관이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선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정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제30조는 분쟁 해결에 관한 거지?

응, 소송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조정이 안 되면 1심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한다고?

맞아. 저작권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은 보통 소액이 많아서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해.

조정이 뭐야?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시간, 비용 적게 들고 비공개로 해결돼서 좋아.

그렇구나, 그래서 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거네?

맞아. 정식 재판 전에 화해로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특약사항 표 작성 방식**

■ 특약사항

| 항목 | 내용 |
|---|---|
| 출판권 등록 여부 | |
| 완전원고 판단기준 | |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 |
| 검인지 부착 여부 | |
|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 |
|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 사항 위임 여부 | |
| 판면파일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 |
| 원고의 반환 여부 | |
|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출판권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 설정 등록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저작재산권　[ ] 설정　　등록신청서**
**[ ] 배타적발행권　[ ] 양도**
**[ ] 출판권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일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 | | | | |
|---|---|---|---|---|
| 저작물 | ① 제 호 (제목) | |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
| | ② 종 류 |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적지 않음 | | |
| 신청인 | 등록권리자 | ③ 성 명 (법인명) | 한글) 영문) | 한자) |
| | | ④ 국 적 | |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⑥ 주 소 | | |
| | | ⑦ 전 화 | 자택 (사무소) 휴대전화 | ⑧ 전자우편 주소 |
| | 등록의무자 | ⑨ 성 명 (법인명) | 한글) 영문) | 한자) |
| | | ⑩ 국 적 | |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⑫ 주 소 | | |
| | | ⑬ 전 화 번 호 |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 ⑭ 전자우편 주소 |
| 대리인 | ⑮ 성 명(법인명) | | |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⑰ 주 소 | | | ⑱ 전화번호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 중

| | |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br>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br>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br>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br>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br>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br>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br>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1건)<br>40,000원<br>(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br>등록면허세<br>(교육세 포함, 1건)<br>저작재산권 : 27,600원<br>배타적발행권·출판권 : 13,800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 종 류 | 복제물 형태 | 비 고 |
|---|---|---|---|
| 어문저작물 |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 |
| 음악저작물 |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 Tape, CD 등 | 작사 - 어문<br>작곡 - 음악<br>편곡 - 2차적<br>작사작곡-음악 |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 |
| 미술저작물 |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 |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 설계도서, CD 등 | |
| 사진저작물 |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 사진, CD 등 | |
| 영상저작물 |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 |
| 도형저작물 |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 |
| 편집저작물 |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 |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 |

참고 **저작권 등록 방법**

**(1) 공동권리자의 저작권 등록**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재산권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인이 나머지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대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등록신청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인 신청인은 신청과정에서 공동권리자 전원의 정보를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단독신청승낙서의 제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제출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된 공동권리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등록시스템 첨부서류 메뉴에 접속하여 단독신청승낙에 인증해야 한다. 한편 제출방법을 내방 또는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서식 중 공동권리자목록을 다운받아 공동권리자 전원이 인적정보를 기재, 서명한 후 이를 저작권위원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중 공동권리자 목록을 다운받아 공동권리자 전원의 정보를 작성, 각자 서명한 후 이를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 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2) 외국인의 저작권 등록**

국제협약 등의 가입국 국민으로서 상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서류 일체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는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공증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신청인인 외국인의 신분과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정증명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의 사본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신분증명서류로 하면 된다.

**(3) 미성년자의 저작권 등록**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처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등록신청 승낙서와 친권자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1장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0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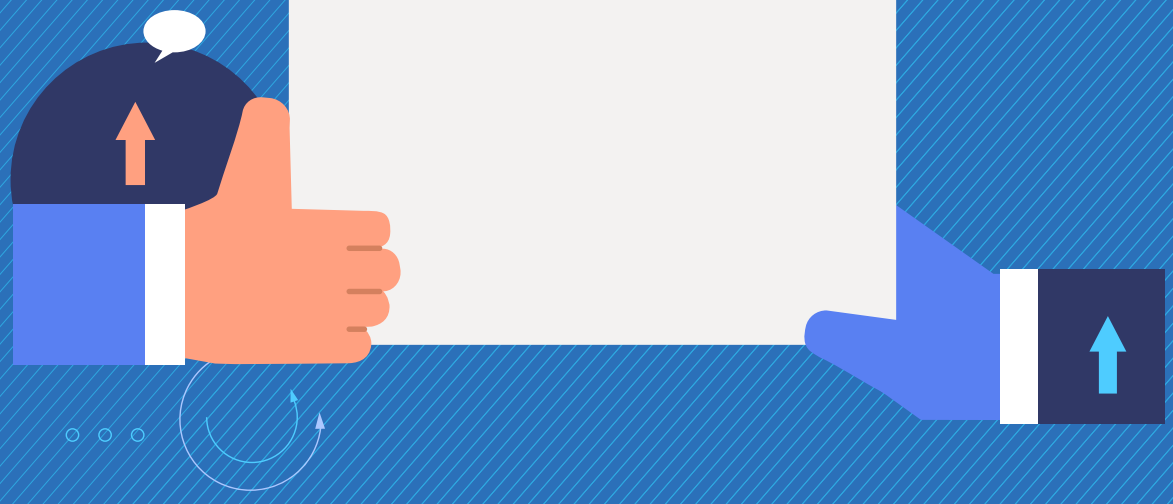

'전자출판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뭐야?

그건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랑 뭐가 달라?

일반적인 이용허락계약은 단순히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포함해.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계약이네.

맞아,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야.

*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발행사)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사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사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 | |
|---|---|---|
| 저작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이명(필명) : _____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
|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전자출판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다르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0.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2조는 어떤 내용이야?

용어 정의에 대한 규정이야.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돕는 거지.

왜 용어 정의가 중요한 거야?

서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

모든 용어를 정의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개념만 한정해서 정의해.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저작권법 제57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배타적발행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발행'이라는 말은 정의 규정에서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발행 등'이라고 하여 '복제·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전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제외한 복제·배포 및 복제·전송하는 것을 모두 지칭하는 권리 개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되므로 배타적발행권은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e-Book) 등이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조건이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경우마다 모두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용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타적발행권자라 하더라도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 한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방법 및 조건이 뜻하는 범주가 애매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e-Book)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 등 기술적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디바이스**와 유통 플랫폼***도 다양한 상황이므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 설정 시 향후 분쟁 소지가 없도록 상호 간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라는 것이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계약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한다. 따라서 복제·배포 또는 복제·전송의 시기, 방법, 발행 등의 횟수, 저작권사용료 조건 등이 그것이며, 배타적발행권자는 그러한 내용대로만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저작물의 수정·증감,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정사항도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 솔루션(Solution) :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를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솔루션은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파일형식, 회사, 상표명, 운영체계 등을 일일이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 디바이스(Device) :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기계나 장치를 의미하며, 주변장치라고도 한다. 컴퓨터 기술상 디바이스는 컴퓨터의 케이스나 하우징의 안팎에 있는 하드웨어의 일종으로, 컴퓨터에 어떠한 입력을 제공하거나, 컴퓨터로부터 출력을 제공받거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 플랫폼(Platform)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메인프레임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MS-DOS나 윈도 ME, UNIX 등의 운영체계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이제 컴퓨터뿐 아니라 각종 게임이나 PDA 등에 이르기까지 기반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하나의 플랫폼은 운영체계, 컴퓨터 시스템의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논리연산을 수행하고 컴퓨터 내의 데이터 이동을 관장하는 마이크로칩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운용되도록 개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에 대해 알려줘.**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권리야. 출판권은 인쇄나 유사한 방법으로만 복제, 배포할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은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같은 것도 포함돼.

**저작재산권자는 어떻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발행 방법과 조건이 중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어. 계약서에 복제, 배포 시기, 방법, 저작권사용료 조건 등이 명시돼.

**질권 설정은 뭐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질권자의 허락이 필요해. 설정할 때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게 좋아.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곧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발행사로 하여금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저작권법 시행령 26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야. 배타적발행권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 중복 계약을 하더라도,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다른 발행사가 그 저작물을 못 쓰게 할 수 있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대항할 수 없어.
- 그럼 등록이 꼭 필요한 거네?
-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등록하지 않아도 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 왜 이런 조항이 있는 거야?
-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조가 필요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거야. 계약서에 등록 안 한다고 특약을 하면 이 조항은 필요 없게 돼.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는 발행사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출판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 과정에서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나 한글맞춤법 또는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배타적발행 행위는 별도의 설정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발행 등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발행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행 등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사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발행사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야. 발행사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 걸 강조해.

저작인격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아?

맞아. 오자나 탈자, 맞춤법 같은 걸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내용이나 형태를 바꾸는 번역이나 개작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은 어떤 경우를 말해?

장편소설처럼 일부 이용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야. 만약 시집이나 소설집처럼 일부 이용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할 수 있어.

그럼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약정해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게 좋아. 특약을 통해 조건과 방법을 정해두면 돼.

제6조는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9조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59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과 예외에 대해 설명해줘.
- 기본적으로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해. 설정계약에 특약이 없을 때만 그렇고,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야.
- 그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은?
- 영상화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이야. 영화나 영상 저작물 제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크기 때문이야.
- 저작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
-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 저작물을 전집이나 추모문집에 수록하거나, 전집의 일부를 따로 발행할 수 있어. 이 경우는 고인을 추모하는 목적으로만 가능해.
- 계약 기간이 끝나면?
-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돼.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 계약 연장은 어떻게 돼?
-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돼. 계약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면 연장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돼.

이는 곧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과 저작물의 분리 이용에 따른 예외에 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와 일방적인 배타적발행권자의 요구로 그 존속기간이 무한대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은 3년이 된다. 저작재산권 자체가 길어야 저작자 사후 70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기한의 배타적발행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므로 그 계약에서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서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된다고 정했다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역시 갱신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저작재산권자와 합의하여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문저작물 등을 영화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 또한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따른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은 고인을 추모할 목적으로 펴내는 개인 전집 또는 추모문집이나 영상물, 전송물 등을 가리키며, 원래 저작물 자체가 전집 또는 편집물이었다면 그 중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추모단행본을 펴내거나 영상

물 또는 전송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고인을 추모할 목적이라는 인지상정의 결과여야 하며, 배타적발행권 설정 당시 적시된 이용방법에 따른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심각한 시장 잠식 같은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적당한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해지 통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고,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시한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발행사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월 내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의 '이용'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이용자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발행사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발행사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가, "한 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은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원고(원화)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원고가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原畵) 등과 같은 실물 원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제4항에서는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반환에 관한 내용이야.

발행사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해?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해. 다만, 쌍방이 협의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발행 시기랑 이용은 무슨 뜻이야?

이용은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해서 유통 상태에 두는 걸 말해. 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발행사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원고 반환은 어떻게 해?

대부분 이메일로 주고받지만, 실물 원고는 보존 가치를 고려해서 반환할 수도 있어. 이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해야 해.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은 해제된 걸로 간주돼.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도 발행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2항에서는 고지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다.

제8조는 무슨 내용이야?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과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해?

저작자는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해.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저작자가 져야 해.

발행사는 무슨 의무가 있어?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계약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해.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거지.

저작자는 발행사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

저작자는 발행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해야 해. 그래서 이후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에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보호와 저작권 표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9조 해설 참조)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정 책임이 저작자에게 있어.

그럼 저작권자가 교정할 경우는?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저작권자가 해야 해.

저작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럴 땐 발행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발행사의 편집자가 교정을 도와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저작자가 확인해야 해.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저작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출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를 준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저작권법 58조의2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전자책(e-Book)의 포맷을 다르게 한다거나 솔루션 또는 디바이스를 바꾸는 등—출판에서 중쇄(重刷) 혹은 중판(重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발행사에게 별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발행사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그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발행사의 부담 정도,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발행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발행사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배타적발행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제작사에서 그것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제작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발행' 등의 경우에

제11조는 뭐야?

저작물의 수정증감과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야.

저작자는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어?

응, 발행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

비용은 어떻게 나눠?

저작물을 완성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발행, 홍보, 판매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해.

수정으로 발행사가 손해 보면?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으로 발행사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 저작자가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

발행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저작권자의 부담액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

관계법령

**저작권법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는 저작 및 발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라면 제2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발행사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3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
■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 / 디바이스 _____ / 플랫폼 _____]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는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복제 유형을 비롯하여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제2항은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제작 및 유통업계의 관행은 앞의 제11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전송물 등에 대한 이용료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관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반영, 표준계약서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전송물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사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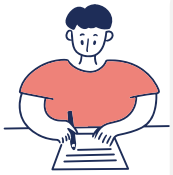

제12조는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야.

이용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

복제 유형,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해. 다른 이용 방식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어.

발행 시기와 홍보는?

전자책 제작과 유통에서는 보통 제작, 홍보, 광고, 판매 비용을 발행사가 부담해. 하지만 저작권자의 의견도 반영해서 협의해야 해.

홍보와 광고에서 주의할 점은?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주의해야 해.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_____원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계속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맞아,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야 해. 품절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지.

"관행에 따라"라는 말은 왜 있는 거야?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야. 계속 발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매출이 낮으면 어떻게 돼?

6개월 동안 매출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판매량이 적으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제13조는 **'계속 발행 등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배타적발행권자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배타적발행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품절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 등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이용자들의 구매 욕구가 매우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발행물을 유통시키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상황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계속 발행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상호 합의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출판물과는 달리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발행사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이야.

어떻게 정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 유형물(도서)와는 다르게,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저작권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해?

발행사가 정해진 기간마다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해. 저작권자는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만약 어기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제15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다.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5조는 선급금에 관한 내용인데. 계약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지.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돼?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거라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면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공제돼.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6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야.
-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어?
- 응,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
- 배타적발행권은?
-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발행사에게 통보해야 해. 반면,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저작권자의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해.

제17조는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전송물(다운로드 방식의 전자책, 오디오북 등) 또는 기타 발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

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행데이터는 누구 소유야?
- 발행데이터는 발행사의 소유야.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교정·교열 및 디자인이 반영된 발행데이터는 발행사의 인적·물적 투자로 만들어지니까.
- 계약기간이 끝나면 발행데이터는 어떻게 돼?
- 계약이 끝나면 발행데이터와 저작권이 분리돼서 발행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저작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발행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 발행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비용은?
- 발행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발행데이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정해야 해. 이건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

행물(CD 형식의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등)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최초 원고에 대한 교정·교열 및 디자인이 반영된 발행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발행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발행사에게 있다.

제1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발행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배타적발행물로서 이용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행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데이터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타적발행권이 미치지 않는(이용조건과 방식이 다른)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사가 제작한 발행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송물 등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발행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발행사가 제작한 발행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그런 경우 발행데이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양쪽 모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 그냥 혼자서 바꾸는 건 안 돼.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제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계약 이행을 기피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발행사가 발행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발행 의사가 없거나 도산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해지 효력은 통보를 받은 때 발생해.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23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20조는 뭐에 관한 거야?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이야.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응,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거야.

피해 구제 방법도 포함되어 있구나.

맞아,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둔 거야.

제21조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면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배타적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복제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복제물을 계속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어떤 경우야?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째, 계약서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야.

둘째는?

둘째, 배타적발행권 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작한 복제물이 남아 있는 경우야. 예를 들어, 3,000매를 제작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소멸 후 1,500매가 남았다면 계속 배포할 수 있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차이는 뭐야?

출판권은 종이책 같은 복제물이고, 배타적발행권은 CD나 DVD 같은 유형물이야. 전송 방식의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아.

계약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돼?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복제물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게 돼.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

제2항은 뭐야?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물을 배포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준수해야 해.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복제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재산권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배타적발행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매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는데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 중 1,500매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그 이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저작권법 제61조에서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출판권과 다른 점은 출판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부합하지만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란 유형물로서의 CD 또는 DVD 같은 것이어서,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2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보다 엄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쌍방이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남은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이를 어기는 경우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서로를 배려하여 약정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이라던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 조항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 건가?

맞아, 이 조항에 따르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

그런 경우엔 계약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연장할지, 손해 배상 없이 계약을 종료할지 등을 협의해서 결정해야 해. 이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아, 이해했어.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서로 책임을 면제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거구나.

응, 그런 취지로 제22조가 마련된 거야.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제2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야.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야. 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네?

맞아, 그게 제23조의 핵심이야.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항에서는 발행사가 발행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야.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주의해서 다루라는 내용이야.

제2항은 뭐야?

발행사가 발행물의 제작과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해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하지만 초상권 이용에 있어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면 조건이나 범위를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맞아, 단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가 필요해.

제25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야.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계약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결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즉,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법이나 원칙에 따라 풀라는 거지?

맞아, 그게 제25조의 핵심이야.

제26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야. 제1항에서는 소송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제2항은?

제2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한쪽이 조정을 거부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야.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거네?

맞아. 그때 제1심 법원을 어디로 할지 정하는 거지.

■ 특약사항

_____

_____

_____

_____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을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특약사항 표 작성 방식

■ 특약사항

| 항목 | 내용 |
|---|---|
| 출판권 등록 여부 | |
| 완전원고 판단기준 | |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 |
| 검인지 부착 여부 | |
|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 |
|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 사항 위임 여부 | |
| 판면파일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 |
| 원고의 반환 여부 | |
|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의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03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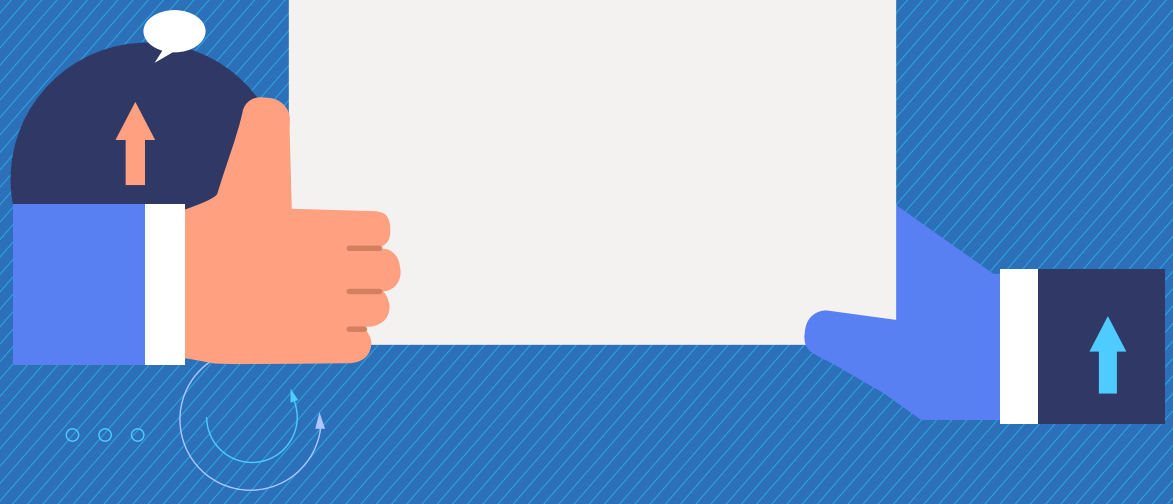

제1조에서 말하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랑 출판권 설정계약이 뭐야?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저작물을 특정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야. 예를 들어,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전송하는 것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거지.

출판권 설정계약은 뭐야?

출판권 설정계약은 저작물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두 계약 모두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맞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겨.

*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가 전자책 및 종이책을 동시에 제작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이용자(발행사)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하고, 발행사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전송하거나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발행사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 | |
|---|---|---|
| 저작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이명(필명) : _____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
|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이 계약서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둘 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 생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할 때,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뭐야?

당사자들이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거야. 그래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지.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개념만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어.

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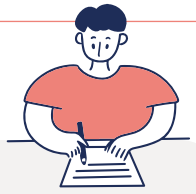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이 뭐야?

설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 권리를 발생시키는 걸 말해.

저작권자는 새로운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어?

맞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어.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설정(設定)'이란 쌍방의 계약에 의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조,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곧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출판사)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발행사(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발행이나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등록은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및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저작권법 시행령 26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등록해야 해?

응,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다른 발행사가 이를 발행하거나 출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거네?

꼭 그런 건 아니야.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등록이 없어도 발행이나 출판은 가능해.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록을 권장하는 거지.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야?

등록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 조항을 둔 거야. 그런데 계약서 말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어져.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복제·배포하는 것과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 및 출판에 대해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 과정에서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나 한글맞춤법 또는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서 벗

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배타적발행 및 출판 행위는 별도의 설정 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 및 출판 등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발행물 및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배타적발행 및 출판 등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오자나 탈자,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을 바로잡는 건 괜찮아. 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바꾸는 건, 예를 들어 번역이나 개작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렇구나. 제2항에서는 뭐라고 해?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장편소설처럼 일부만 이용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해. 시집이나 소설집처럼 일부만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해도 괜찮아.

계약할 때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게 좋다는 거네?

맞아.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는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한다. 여기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제1항에서와 같이 양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재고 등을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2항에서처럼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

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4항에서는 제2항에 의한 해지 통보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동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규정에 대해 발행사(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얼마나 유지돼?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해. 하지만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우선해.

계약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겠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오면 재고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2항에서는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을 모르거나 계약을 계속하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만약 해지 통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제3항에 따르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이 자동 연장돼. 이후 어느 한쪽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연장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종료돼.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지?

그렇지. 제4항에 따르면, 발행사는 해지 통보나 자동 연장 가능성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있어.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라 '언제까지 발행 및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언제 발행해야 해?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경우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해. 이때의 원고를 '완전원고'라고도 해.

그런데 저작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해서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을 말하는 거야?

아니,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해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걸 말해.

특약이 있으면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

응, 특약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 다만, 배타적발행권자의 형편에 따라 언제든 발행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은 무효야.

원고 반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대부분의 원고는 이메일로 주고받지만, 실물 원고의 경우 보존 가치를 고려해 반환할 수 있어.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해야 해.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돼.

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월 내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의 '이용'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이용자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배타적발행권자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가, "한 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은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원고(원화)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원고가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原畵) 등과 같은 실물 원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제4항에서는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발행사(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사(출판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권자 등에게도 발행사(출판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2항에서는 고지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발행사(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다.

저작자나 저작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

자기가 창작하거나 보유한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해. 즉, 발행사나 출판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해서 판매 촉진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 만약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해.

제2항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어?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발행사나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계약의 완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야.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방식에 의한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출판사)에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보호와 저작권 표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저작인격권과 표지 및 검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9조 및 제12조 해설 참조)

발행사나 출판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 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해서 말이야.

저작권 표지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나?

맞아. 발행사나 출판사는 저작권 표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해.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저작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발행사(출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어서,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어.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는?

그 경우에는 저작자가 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그 과정을 수행해야 해.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

발행사나 출판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전문 편집자가 교정하고, 최종적으로 저작자가 확인하면 돼.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를 준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여기서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출판권은 중쇄(重刷) 혹은 중판(重版)의 경우와 배타적발행권은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전자책(e-Book)의 포맷을 다르게 한다거나 솔루션 또는 디바이스를 바꾸는 등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

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발행사(출판사)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그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발행사(출판사)의 부담 정도,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발행사(출판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발행사(출판사)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배타적발행물 및 출판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발행사(출판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발행사(출판사)가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출판사)가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발행' 등의 경우에는 저작 및 발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이라면 2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저작자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로 하여금 발행 및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3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응,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어.

정당한 범위라는 건?

발행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정이야. 발행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손실을 주면 안 돼.

수정으로 발행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럴 경우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돼?

원고 작성 비용은 저작권자가, 발행과 홍보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해.

계약서 작성 시에 뭘 주의해야 해?

수정으로 인한 부담액을 미리 협의해서 정하거나, 필요 없으면 조항을 삭제할 수 있어.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
■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 / 디바이스 _____ / 플랫폼 _____]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 등의 이용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
- 복제 유형,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해. 다른 이용 방식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어.
- 발행 시기와 홍보는 어떻게 돼?
- 전자책 제작과 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 비용을 부담하고, 발행사는 제작, 홍보, 광고, 판매 비용을 부담해. 하지만 저작권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어.
- 홍보와 광고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해?
-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주의해야 해.

제12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조항으로, 먼저 제1항에서는 발행 등에 따른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복제 유형을 비롯하여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2항은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제작 및 유통업계의 관행은 앞의 제11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전송물 등에 대한 이용료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출판사)가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전송물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사(출판사)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____원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_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는 **'계속 발행 등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경

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품절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 등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판매량이 일정 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 즉, 복제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되어 품절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럼 계속 발행해야 하는 거네?**

그렇지만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해. 아무리 홍보해도 매출이 저조하면 품절시킬 수밖에 없거든.

**매출이 저조하면 어떻게 돼?**

6개월 동안 매출액이나 판매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출판물에 대하여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와 발행사(출판사)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 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5조 및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14조 해설 참조)

제3항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발행사(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매출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판매부수 (  )
■ 기타 _____

③ 발행사는 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내용이지?

맞아. 제1항에서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해.

출판물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에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를 곱해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해야 해.

매출 현황과 저작권사용료 지급은?

일정 기간마다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 저작권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계약 위반 시 어떻게 돼?

배상금은 전체 저작권사용료 내에서 지불돼.

저작권사용료 면제는?

홍보용 부수는 발행부수에서 공제해. 합의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행사는 제공 부수와 활용 내역을 알려야 해.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당 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는 발행사(출판사)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4항은 저작권사용료 면제 상황에 대한 조항이다. 발행부수 기준의 저작권사용료 지불방법이라 하더라도 납본을 포함하여 신간 안내, 서평, 그 밖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는 전체 발행부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부수 한도를 상호 합의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수를 초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발행사(출판사)는 제공 부수와 활용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선급금은 뭐야?

선급금은 계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일종의 계약금이야.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거지.

그러면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해.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해?

응,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 하지만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럼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건 문제없지?

맞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하지만 배타적발행권자는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

제1항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발행사(출판사)에게 통보해야 해.

제2항은?

발행사(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해.

제16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이 준용되는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가 발행사(출판사)에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발행사(출판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발행사(출판사)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제17조는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편집과 디자인을 거쳐 출판물을 만들거나 전송물(다운로드 방식의 전자책, 오디오북 등) 또는 기타 발행물(CD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파일을 포함하며, 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

형식의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등)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최초 원고에 대한 교정·교열 및 디자인이 반영된 발행데이터(판면파일 포함)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발행사(출판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발행사(출판사)에게 있다. 제1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는 발행사(출판사)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발행물로서 이용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데이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이용조건과 방식이 다른)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송물 등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발행사(출판사)가 제작한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를 담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런 경우 발행데이터 매수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특약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조는 뭐에 관한 거야?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야.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해.

그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거네?

맞아.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서로 합의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

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지만, 출판물을 만들 때 발행데이터와 판면파일은 누구 소유야?

그건 발행사(출판사)의 소유야. 교정, 교열, 디자인 등의 작업은 발행사가 투자해서 만든 거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발행데이터와 저작권이 분리돼서 발행데이터가 쓸모없어질 수 있어.

저작권자가 다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발행사의 발행데이터와 판면파일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럼 비용은?

발행데이터를 사용할 때 비용을 정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제1항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

만약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르면, 그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발행사가 발행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제3항에 따르면, 발행사가 발행을 중단할 의사를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계약 해지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 발생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제4항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9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제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출판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아울러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9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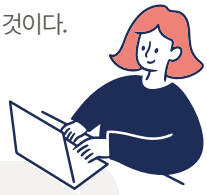

계약 당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피해가 다 구제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해?

그래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거야. 성희롱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도록 하기 위해서지.

제21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야.

출판권이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61조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복제물은 계속 배포할 수 있어.

**제21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권이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복제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판매 등의 방법으로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복제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재산권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매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는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중 1,500매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몰래 그 이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란 유형물로서의 CD 또는 DVD 같은 것이어서,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보다 엄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남은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이를 어기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배려하여 약정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 발행사(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 지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끝난 후에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어?

응,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째, 특약이 있으면 소멸 후에도 남은 복제물을 판매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계약서에 "소멸 후에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는 거야.

둘째는?

둘째, 권리 존속 기간 중에 만든 복제물이 남아 있으면 계속 배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3,000매를 만들었는데 1,500매가 남았다면 그걸 팔 수 있어.

저작권자 몰래 더 제작하면 안 되지?

맞아. 그건 저작권 침해야.

제21조 제1항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복제물도 배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책임을 질 수 있어.

제2항은?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해.

제22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재난이 발생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

쌍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고, 이후 조치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응, 그게 이 조항의 핵심이야.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지?

맞아,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항에서는 발행사(출판사)가 발행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가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야?

먼저,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춰서 서로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제2항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제2항에서는 출판사가 발행물의 제작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책을 만들 때나 홍보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초상권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정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해.

그러니까 출판사가 정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초상권 같은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네.

정보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사용 범위를 정해야 해.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양측 모두 안전하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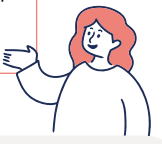

제25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도, 실제로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 계약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을 따라 해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법이나 표준적인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생기면 법이나 원칙에 의지해서 해결하자는 거네.

그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제26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26조는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이지?

응, 그리고 제1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제2항에 따르면, 그럴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예시> 특약사항 표 작성 방식

■ 특약사항

| 항목 | 내용 |
|---|---|
|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 |
| 완전원고 판단기준 | |
| 검인지 부착 여부 | |
|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 사항 위임 여부 | |
| 발행데이터 원본 구매 청구에 관한 사항 | |
| 원고의 반환 여부 | |
|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1통의 계약서로 동시에 설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정의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 1장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04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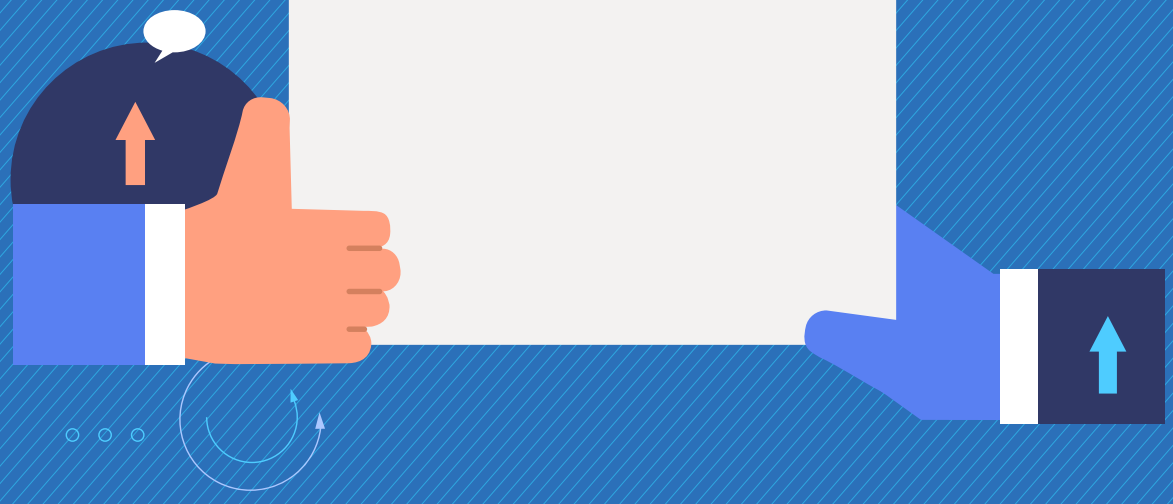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공중송신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양수인에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은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공표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자'랑 '저작재산권자'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뭐야?

저작자랑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수 있어서 그래.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 만든 사람을 의미해.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가 저작자겠지. 그런데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작자가 사망해도 저작재산권은 70년 동안 유지돼. 이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저작권이 사망한 저작자의 후손이나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동저작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을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한 작품이라면 그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거야.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 | |
|---|---|---|
| 저작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이명(필명) : _____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성명 : _____ | |
| 저작물의 표시 | 제호(가제) : _____ |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 _____과(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달리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자'(著作者)란 곧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사실상의 저작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는 원저작물(1차적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

작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양도 또는 상속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므로 별문제가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일정 권리를 양도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또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사상이나 감정이 하나가 되어 구체화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 모두가 저작자가 된다.*

*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저작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저작자 등의 추정'(제8조)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 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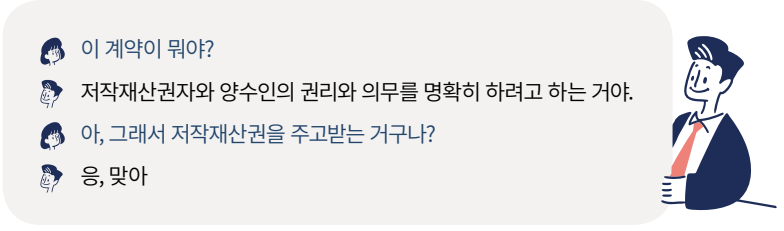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부 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

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3.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의 내용은 유지한 채 표현을 변형하고 그 변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4.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왜 용어 정의가 중요한 거야?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하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는 거지?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만 한정해서 정의했어.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별표>

| 저작재산권의 유형 | 포함 여부 (○ 또는 ×) | 범위(일부 또는 전부) |
|---|---|---|
| 복제권 | | |
| 공연권 | | |
| 공중송신권 | | |
| 배포권 | | |
| 전시권 | | |
| 대여권 | | |

제3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간적 제한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산물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 등에 있어서의 소유권

과는 차이가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특성에 입각하여 재산권 부분을 권리자가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규율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45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재산권은 뭐야?**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야.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어. 또한 시간에 따라 소멸되기도 해.

**소유권과는 어떻게 달라?**

저작물은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물건 소유권과는 달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저작재산권을 규율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일반적인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다양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그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양도(讓渡, assignment)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양도란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먼저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소유권의 경우 그것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저작재산권은 다르다. 저작재산권 자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작재산권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자는 당연히 이용형태에 따라 권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복제하느냐에 따라 같은 복제권이라도 완전한 별개의 권리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분적(可分的)인 특성이 저작재산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중송신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송방식에 의한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한 재산권의 분할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편소설의 저작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은 물론 각색하여 공연에 이용하거나 영상제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공연이라도 공연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그들에게도 별도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한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분할 및 양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래의 권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 또는 '5년' 동안의 배타적 이용허락과 같다.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번역에 의해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그것을 '한국 내에서만' 또는 '일본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제한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각각 별개의 권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역적 제한이 국내에서도 가능하여 '충청남도' 또는 '전라남도' 하는 식으로까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

**양도란 뭐야?**

양도는 '자기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해.

**저작재산권은 일부도 양도 가능해?**

맞아. 복제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나눠서 양도할 수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한도 가능해?**

'3년 동안' 또는 '한국 내에서만'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고 저작재산권자에게 유보돼.

**표준계약서에서는?**

양도되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정해.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을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한 전부를 양도한다"는 권리자의 명백한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하는 사람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항의 규정은 저작재산권자의 장래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대개가 저작재산권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는 측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소설가가 한순간의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동안 써 놓은 어떤 작품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 상당액의 금전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소설가는 앞뒤 가릴 겨를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저작재산권의 전부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로 소설가는 그 작품에 대한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상황에서의 계약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는 계약임을 잘 알고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면 여기서의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정'이란 언제든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도 포함되는 양도임을 특약으로서 분명히 한다면 제45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단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체의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만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제3조에서 먼저 양도되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도 등록의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저작권법 시행령 26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제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양수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하면 등록도 해야 돼?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같은 저작물을 두 번 양도했을 때, 등록된 쪽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그럼 등록 안 해도 문제는 없겠네?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목적이라서, 안 해도 권리 행사는 가능해. 다만, 등록하려면 저작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거야.

만약 계약서에 등록 안 한다고 특약하면 그 조항은 필요 없겠네?

그렇지,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조항은 필요 없어.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제4조에서 살핀 바와 같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더 이상 해당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5조의 내용은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확실한 주의 환기를 위해 상징적으로 포함시킨 조문이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하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록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양도 후에 양도인은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아니, 양도인은 더 이상 그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제5조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어. 당연한 내용이지만 저작재산권자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야.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___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유효기간을 두는 게 이해하기 어렵네.

출판 등 관련업계의 관행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야. 하지만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일부 또는 일정 기간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게 낯설지 않다고 해.

그럼 표준계약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유효기간을 없애거나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면, 그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어서 삭제할 수 있어.

제6조는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 등 관련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라 할지라도 그것의 일부 또는 일정 기간 등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작재산권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며, 만일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없앤다거나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는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같은 물권(物權)의 경우에는 그것의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함으로써 질권 설정 또는 소유권 변동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라고 믿을 만한 자료, 예컨대 발행된 책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탕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7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만일 사전에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또는 이중 양도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저작재산권자가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제2항은 앞의 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일반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와 달리 양도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양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저작재산권이 다시 저작재산권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므로, 만일 양수인이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일부나 전부를 다시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양수인이 모두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부동산처럼 저작재산권도 소유권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아니, 저작재산권은 확인하기가 어려워. 발행된 책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7조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자가 사전에 질권을 설정했거나 이중 양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는 저작재산권자가 책임지도록 했어.

양도 기간이 끝나면 저작재산권이 다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돌아가야 하지?

양수인이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질권 설정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는 양수인이 책임지도록 했어.

제8조는 **'완전원고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제8조 (완전원고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완전원고의 개념은 여기서도 준용된다. 그리고 제8조에서 서로 합의하게 되는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 및 양도 시기는 추후 계약 위반 또는 배상 책임을 다루는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함으로써 더 이상 계약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종료되도록 한 것이다.

완전원고의 개념이 뭐야?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말해. 이 개념은 여기서도 준용돼.

제8조에서는 뭘 주의해야 해?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 및 양도 시기는 추후 계약 위반이나 배상 책임을 다루는 근거가 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더 이상 계약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무슨 의무가 있어?

자기가 창작하거나 보유한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해. 양수인에게 법적으로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해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 만약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저작재산권자가 져야 해.

제2항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양수인이 계약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 저작재산권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해.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제9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양도인)는 양수인에게 법적으로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재산권자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제2항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료 지급, 저작재산권의 활용, 정보 등 출판 등을 위한 저작재산권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수인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이전에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는 마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게 위해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① 양수인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제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양수인은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양수인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는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이 뭐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야.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행사방법도 규정돼 있지?

특히 중요한 건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야. 이건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라는 뜻이야.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고,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慰藉料)'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조에서는 그러한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드러난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아는 어느 이용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이용했다면—예를 들어, 저작자의 이름을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출판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개작하여 외설물로 둔갑시키는 등—원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상속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한 양수인은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양수인은 제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서도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양수인이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를 알려서 양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양수인이 임의로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인격권은 뭐야?
정신적인 권리야. 저작자만이 느끼고 입증할 수 있어.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이야.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양도나 상속할 수 없어.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해.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상속자가 명예 훼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양수인은 주의할 점이 있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홍보, 광고 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고, 수정이나 증보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해.

임의로 수정하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해.

제11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앞서 '출판권 설정계약서'나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출판물 등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출판사 등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만일 출판사 등에서 출판물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판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출판(自費出版)'의 경우에는 저작 및 출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저작물을 양수받아 출판 등의 제작, 홍보, 판매를 위한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출판 관련 계약서에서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로 제작하고 홍보,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해.

출판사가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면?

그 경우 출판사가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어. 반대로 자비출판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는?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판매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제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① 양수인은 제2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_____원(₩_____)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지급할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판매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산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수대금 지급방식이 일괄 지급인 경우가 많으나, 거래 관행상 현실적으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 사이에 또 다른 지급 기준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에서는 판매가 중요한 기준이지?

맞아. 하지만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저작물 자체의 재산권을 다루기 때문에, 양수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지 않아?

그렇지. 거래 관행상 선급금 지급 방식도 여전히 존재해. 그래서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어.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다른 지급 기준을 합의할 수 있어?

물론이야.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다른 지급 기준을 합의하면 그에 따라 약정할 수 있어.

**제13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주체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양수인이다. 곧 특정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자기 권리에 입각하여 해당 저작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므로, 제3조에 의한 양도의 범위, 제6조에 의한 양도 유효기간 등이 정해져서 제한적인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그 조건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양도한 저작재산권을 회수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저작재산권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즉 양수인도 할 수 있어. 양수인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양수인은 어떤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진 않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예를 들어, 제3조에서 양도된 범위나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제한적인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경우, 그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을 정해 놨다면, 그 기간 안에 저작재산권을 회수해야 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권리가 없으니까.

**제14조 (원고 등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특약에 의한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 및 기타 자료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는 **'원고 등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는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와는 달리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는 원고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는 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과 다르게, 양수인은 원고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아,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원고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 저작재산권자는 이 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해.

제15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반환)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3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해?

먼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지.

해제랑 해지는 어떻게 달라?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의무를 없애는 거고,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거야.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성범죄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주제'**에 관한 조항이다. 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피해가 다 구제되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계약서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명시해 두었어. 피해를 당연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제17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야.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변경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한 거구나?

맞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유효해.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확실히 기록해야 해.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8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계약서가 완벽해도 이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제18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이나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구나.

정확해. 계약서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자는 의미야.

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19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계약 이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

만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그리고 제1심 법원을 정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05

# 저작물 이용계약서
# (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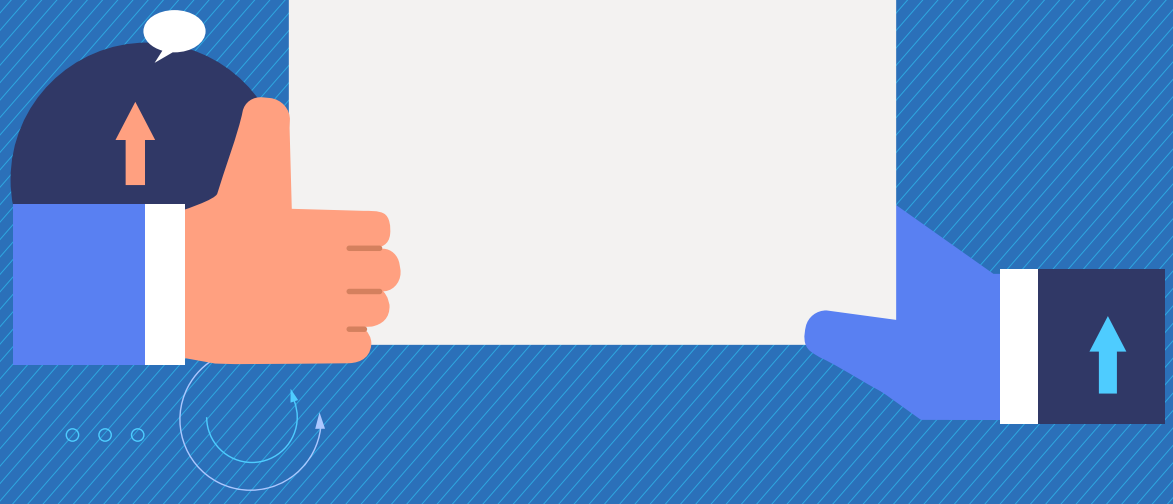

#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분량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 _____(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관하여 그 이용 방법 및 조건과 범위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목적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이용자와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 규정이다.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허락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양자의 선택적 합의에 따라 이용자가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거나 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이용권을 가질 수도 있는, 준물권적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 유형이다. 기존의 단순이용허락계약 유형과 독점이용허락계약 유형을 통합한 것이다.

저작물 이용계약서는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 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야. 즉,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 계약의 권리 방식은 어떤 거야?

이 계약은 두 가지 권리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 첫째,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인 권리. 이 경우, 여러 사람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둘째, 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인 권리. 이 경우, 특정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권리자는 아니야. 즉, 물권처럼 강력한 권리는 아니고, 채권적인 효력만 있어. 기존의 단순이용허락계약과 독점이용허락계약을 통합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료 등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3.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4.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게 왜 필요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해야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되면 계약 이행 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맞아. 용어 정의는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다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야.

**제3조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위 저작물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것을 허락하고, 이용자는 이 계약의 허락 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허락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기본 원칙은 뭐야?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용자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원작 그대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허락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응,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제4조 (이용허락의 내용)**

① 이용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없다( ).]

③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다.

제4조가 '이용허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제1항에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저작물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

제2항에서는 뭘 다루고 있어?

이용허락이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독점적이면 저작물을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비독점적이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세부 사항은?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을 특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4조는 **'이용허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우선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락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출판 등을 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이용허락의 내용이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선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한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서에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가 같은 저작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같은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은 독점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저작물 이용기간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하여야 한다.

'저작물 이용기간 등'에 관한 조항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은 보통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유효해. 하지만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이용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돼. 만약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해.

아,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면 그냥 끝이고, 다시 하려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거네?

그렇게 해야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제6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는 일금 _____원(₩_____)으로 정한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를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한 지정계좌는 아래와 같다.

_____

제6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 금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사용료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다. 출판권 설정계약과 달리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저작권사용료 지급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저작권사용료가 뭔지 설명해 줄래?

저작권사용료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돈이야. 출판권 설정계약과 다르게,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보통 이 돈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계약서에 얼마를 줄지 명확하게 적어 놓도록 하고 있어.

돈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응, 그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정해 놓고 있어. 이렇게 하면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지.

그래서 계약서에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분명히 적어 두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서로 오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야.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이용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출판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완전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제1항에서는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즉,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의 인도시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이 또한 쌍방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작성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및 이용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원고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 이용허락계약은 어떻게 돼?

이용허락계약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해. 제1항에서 '완전원고'의 인도 시기를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이용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어?

제2항에 따르면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한도 쌍방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권자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제2항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사용료 지급, 저작물의 활용, 정보 등 이용자가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 날인 전에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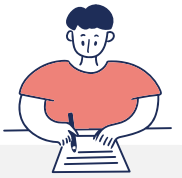

저작권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거야. 만약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권자가 져야 해.

그럼 제2항은 어떤 내용이야?

제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할 때, 이용자가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저작권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등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

저작인격권이 뭐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야.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해. 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를 세분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동일성유지권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확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9조 해설 참조)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이용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0조가 '교정'에 관한 조항이라던데, 어떤 내용이야?

제9조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그래서 교정의 실질적인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다고 봐야 해.

그럼 저작자가 교정을 직접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엔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교정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전문 편집자를 두고 있는 이용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하지만 교정과 교열의 최종 결과물은 저작자인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해. 이렇게 해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거지.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홍보, 판매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

**제11조 (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이용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저작물을 허락받아 출판 등의 제작, 홍보, 판매를 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12조는 **'저작권의 표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는 계약이지만, 출판권자는 반드시 그 복제물에 저작권자를 표지(標識)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을 준용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적당한 방법, 즉 표지 및 간기면 등에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을 표지해야 한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등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표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그렇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도 저작권법의 규정을 따라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해. 이용자는 저작물의 표지나 간기면 같은 적절한 곳에 저작자의 이름과 발행 연월일 등을 표기해야 해.

**제13조 (정가, 제작 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이용물에 대한 정가, 제작 방식 등과 함께 이용물의 판매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이용자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가, 제작 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들었어. 그건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은 출판계의 관행에 따라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판매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이용자는 책의 정가, 판형, 제책 방식, 중쇄 시기, 홍보와 광고, 판매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홍보나 광고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

있어. 이용자가 저작물을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과장이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그게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점을 조항에 명시해서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

제13조는 **'정가, 제작 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의 관행에 따라 앞의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가 출판물 등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그리고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제14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

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의 완전한 결과물을 제작 완료일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결과물이 도서 등 유형물일 경우 _____부, 공중송신 및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관리자 계정이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이용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는 **'저자권자에 대한 증정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이용자가 업계의 관행 또는 계약 규정에 따라 자신이 이용한 완전한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증정하는 수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증정 부수 등을 초과하여 저작권자가 더 필요한 증정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4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에 관한 내용이라던데, 어떤 걸 다루고 있어?

이용자가 업계 관행이나 계약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증정해야 하는 수량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추가로 증정본을 더 원하면 어떻게 해?

저작권자가 정해진 증정 부수 외에 더 많은 증정본을 원할 때, 서점에서 정가로 사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15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반환)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런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줘서 요구해야 해. 법적으로도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이행을 독촉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만약 상대방이 이행을 여전히 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의무를 없애는 거고,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야. 이 경우,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그렇다면, 계약 해지나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리고 성범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6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5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성희롱 같은 피해를 당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제15조 제4항에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런데 그걸로 피해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16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제16조에서는 뭘 다루고 있는 거야?

제16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놓은 거야.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 말고도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냥 계약 해지나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계약서에 적어 놓은 거구나.

그렇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잖아.

제17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후속 조치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상황이 불가피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워지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협의로 해결하는 거네.

이렇게 해야 서로에게 공평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제18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제18조가 있는 거야. 이 조항은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환기시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네.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지. 서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야.

**제19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위 저작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이용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자가 이용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가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야?

제1항에서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거야.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자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제2항은?

제2항에서는 이용자가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할 때,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야. 다만, 이 정보가 초상권과 관련될 경우, 특히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그 조건이나 범위를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감한 부분은 서로 합의로 해결하자는 거네.

이 조항은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야.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결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이나 원칙을 참고하자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야.

제20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21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계약 이행 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먼저, 제소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제1심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조정 절차를 밟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거구나.

응, 그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특약사항

_____

_____

_____

_____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으로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이용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별도의 권리등록이 필요 없으므로 2통을 작성해서 각자 1통씩 보관하면 된다.

06

#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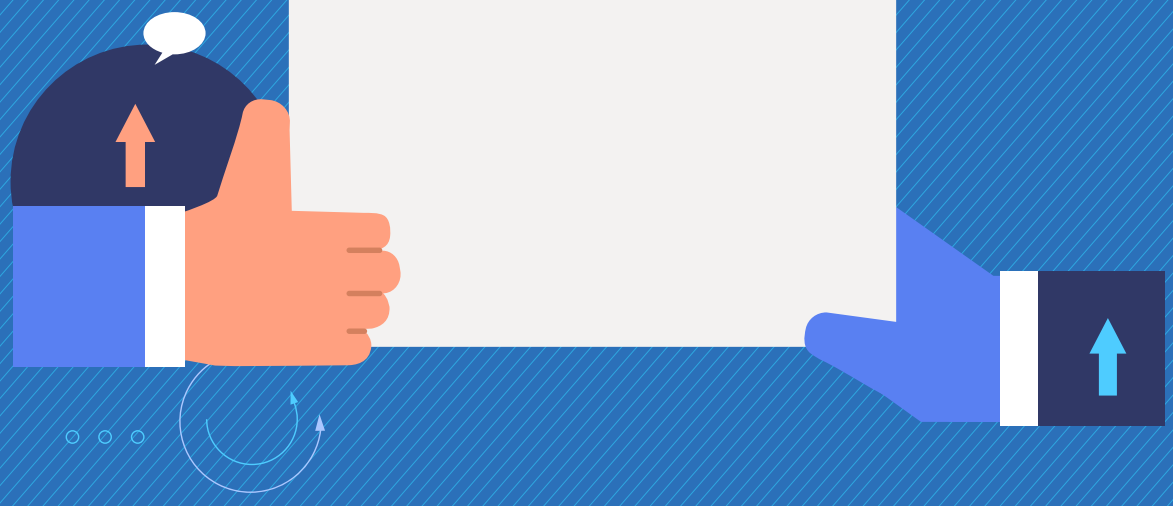

#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

저작권자
이름 및 주소 : *Ganada Publishing Co., Ltd.,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1번지*

출판사(해외)
이름 및 주소 : *ABC Publishing Co., Ltd., 영국 런던 1번지*

저작물
제호 및 저자명 : *I LOVE KOREA written by Hong Gildong, illustrated by Kang Ildong*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 저작권자(Proprietor) ____와(과) 해외 출판사(Publisher) ___는(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_____**(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_____**(국가, 혹은 언어권)**에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혹은 e-플랫폼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__개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계약 연장을 위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1조는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언어와 국가, 형태를 규정할 수 있다. 한국어판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배포하게 될 경우, 양자 합의 하에 그 시장 영역을 '전 세계(World)'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혹은 계약 출판사 당사자 소재 국가로 한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영국 소재 출판사와의 계약일 경우, 시장 영역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로 한정할 수 있고, 북미(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번역 출판되는 형태도 과거 종이책 포맷에서 현재는 전자책, 오디오북,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챕터별로 해당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작물 형태와 시장 유통 공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포맷 유형의 범위와 유통 시장 영역은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 이 계약서 모델은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하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공중송신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번역출판 및 배타적발행을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 및 기타 발행과 관련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등 권리 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다.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계약일로부터, 혹은 해당 번역판 출간일로부터)이나, 상황에 따라 5~10년으로 정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영미권의 경우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제1조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에서는 번역 출판 시 사용할 언어, 국가, 그리고 출판 형태를 규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국어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배포할 때, 그 시장을 전 세계로 지정하거나 특정 국가로 한정할 수 있지.

그러면 출판 형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챕터별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 출판 형태와 유통 시장 범위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보통 5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5~10년으로 정하기도 하고,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

**제2조 (선급금 및 인세율)**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급금은 추후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① 선급금 : USD _____ (서명 시 지불)

② 인세율 : 종이책: _____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____%, _____부 이상 도서정가의 ____% 전자책 및 오디오북 : 순수익의 _____%

③ 위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a) 현지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____%

b) 저작권자 _____%

c) 선급금 별도로, 데이터(표지, 혹은 내부 일러스트 사용 시) 파일 사용료 **NET USD** _____

④ 출판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납부증빙서류를 저작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급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해외 현지에서 제3자에게 부차적인 저작물 이용권(이하 '부차권'이라 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내 저작권자와 해외 출판사 간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위 저작물 출간 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b) 위 저작물 출간 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c) 북클럽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제2조는 **'선급금 및 인세율'** 조항이다. 선급금은 계약금의 형식으로 통상 계약서 서명 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며, 반환되지 않는다. 지불 일정과 관련하여, 영미권이나 유럽으로의 수출 시 현지 출판사는 경우에 따라, 그리고 선인세 규모와 관계없이 2회에서 4회에 걸쳐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2회에 지불될 경우 서명 시와 출간 시에 각각 50%씩, 3회에 걸쳐 지불될 경우 서명 시와 번역원고 입고 시 및 출간 시에 각각 1/3씩을, 4회에 걸쳐 지불될 경우 서명 시 25%를 필두로 번역원고 인도 시와 하드커버 출간 시 및 페이퍼백 출간 시 각각 25%씩 지불하는 등, 그 지불 회차와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d) 앤솔로지, 축약, 인용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e) 오디오북, 오디오 리딩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f) 페이퍼백 출판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g) 기타 _____

이런 제안이 올 경우, 탄력적으로 조율하여 정하면 된다.

표지나 본문 일러스트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선급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선급금과 별개로 지불되기도 한다. 선급금(추후 발생하게 될 추가 저작권사용료 포함)에는 현지 원천세율이 적용되어 해외에서 지불 송금 시 해당 세율 적용 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불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이중과세 방지, 혹은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자 소재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비거주자 확인' 서류를 요청하는데, 이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과세보다 높은 현지 원천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현지 원천세 납부증빙서류는 추후 현지 출판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제5항의 '부차권'은 해외 출판사가 현지의 제3자(출판사)에 각각의 부차권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비율의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 해당 부차권 수입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정산 지불 시점은 통상적으로 해외 출판사가 연중(연 1회 내지 2회) 약속된 시점에 행하는 저작권사용료 정산보고 시 반영하여 처리된다. 이 항목은 현지에서 해당 저작물이 다양한 포맷(버전)으로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어 수입을 창출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해외 출판사에서 원할 경우 적극적·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5항의 분배 비율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을 명기한 것으로, 양자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

선급금은 보통 계약금 형식으로 계약서 서명할 때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들었어.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보통 2회에서 4회에 걸쳐 지불하는데, 서명 시, 번역원고 입고 시, 출간 시 등에 나눠서 지급해.

표지나 본문 일러스트 사용료는 선급금에 포함돼?

경우에 따라 달라. 선급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선급금과 이후 추가 저작권사용료에는 현지 원천세율이 적용돼서, 해외에서 지불할 때 해당 세율만큼 공제하고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가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나?

'비거주자 확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과세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세를 지불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서류 준비가 필요해.

**제3조 (출판사의 의무)**

① 출판사는 계약서 서명완료 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청구 내역서(Invoice)에 명시된 지불일에 따라 현지 원천세(Local withholding tax) 공제 후의 선급금 USD ___를 저작권자에게

제3조는 **'출판사의 의무'** 조항이다. 저작권자는 해외 출판사로부터 선급금(혹은 저작물 내부의 기타 일러스트·도판·사진 등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받은 후 통상적으로 2~3주 내로

직접 지불하거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저작권자는 선급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저작물이 게재된 도서의 본문 및 기타 관련 파일을 출판사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번역 작업용 견본도서 ____부를 출판사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위 저작물과 관련한 파일은 해외 발행사의 독점적 발행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제한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출판사가 속한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번역 발행권 침해의 대책으로, 출판사가 확보한 번역 발행권을 현지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 단속의 협력을 위하여 출판사에 위임장을 제공하고 출판사가 자체의 비용으로 저작권자와 연락한 후에 단속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침해자로부터 얻은 보상금은 현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작업용 견본도서와 편집 제작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파일을 직접 발송·제공한다.

한편, 제2항은 해외 현지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지 출판사에 그것을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행할 자격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작권자는 해외 출판사로부터 선급금이나 일러스트, 사진 등의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보통 2~3주 내로 작업용 견본도서와 편집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직접 발송하거나 제공해.

그렇구나. 근데 만약 해외에서 저작물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해?

제2항에 따르면, 그런 경우 현지 출판사에 저작권자를 대신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해. 그래야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거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침해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나누어 충당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현지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비용은 보상금에서 해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제4조는 **'회계의 보고'** 조항으로, 해외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합의한 기한까지 발행물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해외 출판사의 잘못으로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오차범위 5% 미만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위 저작물에 대한 발행물 판매내역을 다음 해 **___월 ___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추가 저작권사용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___월 ___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가 필요시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출판사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한 출

판사의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판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내역 상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오차범위 5% 미만의 계산상 착오는 예외로 한다.

해외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물 판매내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해?

합의한 기한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만약 해외 출판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

그럼, 오차가 있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거야?

아니, 의도적이지 않게 5% 미만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그 정도의 오차는 감안해주는 거지.

아, 그래서 작은 실수는 용인해주는 거구나.

제5조는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계약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금융제도를 잘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 행 명 : _____ 은행지점 : _____
은행주소 : _____ 계 좌 주 : _____
계좌번호 : _____ 은행코드 : _____
스위프트 코드 : _____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저작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해. 만약 저작권자가 계좌를 변경하면, 그 변경된 지정계좌로 서면 통지한 후에 지불하면 돼.

그러니까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가 바뀌면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알려준 새 계좌로 보내라는 거네.

맞아, 그렇게 해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어.

제6조는 **'출판사의 발행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 명시되는 출간기한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통상 18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 출간되지 못할 경우, 해외 출판사는 사전에 합당한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동의 및 승인을 얻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 없이 기한을 넘겨 출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원인은 보통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추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계약 위반 통보 형식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배려 차원에서 출간시한 연장을 허락해 주는 것이 향후의 상호 비즈니스 연계에도 도움이 된다.

**제6조 (출판사의 발행 책임)**

① 출판사는 이 계약일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출판사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한다. 출판사가 위 기간 안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발행사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다만, 출판사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발행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 증정본으로 현지어 번역본 ____부를 발행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쇄의 경우에는 각 쇄마다 2부씩 저작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증정본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사로부터 판매정가의 ____%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③ 출판사가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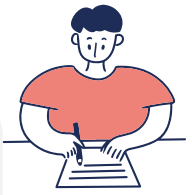

제6조 '출판사의 발행 책임'에 대해 말해줄래?

출간기한이 명시되는데, 보통 18개월로 정해. 하지만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출간하지 못할 경우, 해외 출판사는 사전에 이유를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해.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한을 넘겨서 출간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주로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곤 하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바로 통보하기보다는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출간시한 연장을 허락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향후 비즈니스 관계에도 도움이 돼.

이해해. 너무 딱딱하게만 처리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네.

그렇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제7조 (번역)**

① 위 저작물의 번역에 있어 현지 독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가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

제7조는 **'번역'**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해외 출판사로부터 저작물의 번역본 출간 전에 표지와 간기면 문안 표기 시안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종 저

어야 한다.

② 출판사는 발행 전 저작권자에게 번역물 발행본의 표지디자인 시안 및 출판권 및 저작권 표기 문안을 제출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출판사는 어떤 국가에서도 출판사의 발행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발행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동시에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④ 위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모든 부수의 표지, 저작권 표기면(간기면) 및 공중송신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 저작권자(저자), 한국 출판사명,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 발행연도 등의 영문 표기가 잘못 명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4항에 규정한 것처럼 해외에서 저작물의 번역출간 전에 번역본(번역원고)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제적인 저작권 수출입 과정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내용상 오역의 여지가 많거나 정확한 감수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구를 통해서 번역원고를 받았을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검토하여 현지에서의 출간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이 조항은 유의하는 것이 좋다.

제7조는 '번역'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항에 따라 해외 출판사로부터 번역본 출간 전에 표지와 간기면 문안 표기 시안을 받아서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저작물, 저작권자, 한국 출판사명, 크레디트 라인, 발행연도 등의 영문 표기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럼 번역본 제출에 관한 규정도 있지 않아?

응, 제4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번역본 출간 전에 번역원고를 제출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오역이 걱정되거나 정확한 감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업무 효율을 위해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게 좋아.

번역원고를 받으면 검토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겠네.

맞아, 그렇게 되면 현지 출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조항은 유의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아.

제8조는 **'저작권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저작물이 번역출간되기 전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그 표기가 정확한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8조 (저작권 표기)** 출판사는 번역 발행본의 표지와 저작권 표기면에 저작자 성명과 원제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기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원서명(저작물)**

Text copyright © ____년도, _____(작가명)
Illustration copyright © ____년도, _____(일러스트 작가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저작권자명(한국 출판사명)
_____(언어) translation copyright © (해외)출판사명.,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한국)저작권자명 through 에이전시명(국내, 혹은 해외)

[예시]
**I Love Korea**
Text copyright © **2020, Hong Gildong**
Illustration copyright © **2020, Kang Ildong**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Ganada Publishing Co., Ltd.**
English translation copyright © **Sung Choonhyang,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anada Publishing Co., Ltd.** through **____ Agency**

저작물이 번역출간되기 전에 저작권 표기를 사전에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야?

저작권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번역출간 전에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게 필요해. 아시아 출판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지만, 영미나 유럽 쪽 출판사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출간해서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

저작권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해.

과정이 아시아 출판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영미·유럽권역 출판사에서는 가끔 이 과정 없이 책을 출간하는 바람에 추후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출판사가 관련 서류 요청 시 저작권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권 보유'**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한번 모든 권리의 근원이 저작권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자기 권리에 대한 입증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권리의 근원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외에는 다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있나?

저작권자의 자기 권리에 대한 입증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출판사가 위 저작물에 대한 번역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출판사가 위 저작물 발행 시점으로부터 ____ **년** 후 더 이상 재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판매부수가 ____부 미만일 경우
3.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 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____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판사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5. 출판사가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저작권자에게 환원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____개월 동안 재고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고분 판매시한이 종료되면 해외 발행사는 즉시 남은 재고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는 **'계약의 종료'** 즉,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시점과 부수는 판매보고서를 점검한 후 추이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현지 출판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예도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되더라도 10년 안팎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연중 판매량이 거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재쇄도 없으며, 해당 저작물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 등 마케팅 또한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출판사와 계약 종료를 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제2항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분에 대한 판매 유예기간을 합의하에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짧게는 6개월로 정하기도 한다. 계약 시 이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확정하면 된다.

제10조는 '계약의 종료'에 대한 규정이라던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

특히 제1항 제2호에서는 판매보고서를 확인하고, 저작물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계약 해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현지 출판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 동안 저작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야 해.

그런데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10년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 연중 판매량이 거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재쇄도 없으며, 특별한 마케팅 활동도 없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종료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계약 종료 후 재고분에 대한 판매 유예기간도 있지?

그렇지. 제2항에서는 그 기간을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통 12개월 정도로 정하고, 짧게는 6개월로 하기도 해. 이 기간은 계약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확정하면 돼.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해외 발행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는 **'계약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날짜까지 해외 발행사가 선급금을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계약의 효력 상실'은 어떤 규정이야?

계약에서 정한 날짜까지 해외 발행사가 선급금을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

응,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이건 계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야.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는 **'분쟁의 해결'** 조항이다. 분쟁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소송은 저작권자 소재지와 해당 도시 관할법원으로 삼는 것이 표준이지만,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준거법을 자국 현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출판사에서는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고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계약 시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양자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변경하면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은 저작권자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게 표준이잖아?

맞아, 저작권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할 때는 그들이 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사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서 조정하면 돼. 현지 출판사들이 자국법을 고수하려고 할 때가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해. 중요한 건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국내 저작권자 : Ganada Publishing Co.,

서명_____

서명인 / 서명일

해외 출판사 : ABC Publishing Co., Ltd.

서명_____

서명인 / 서명일

서명의 경우 가급적이면 자필서명이 좋다. 한국에서는 인감(직인)이 일상적이나 해외에서는 서명인의 자필서명이 없고 도장만 찍힌 경우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 서명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페이지 하단 일부분 공간에 서명인의 머리글자만을 기입하는 약식 서명인 이니셜(Initial) 서명 병행도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 2장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01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권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오디오북을 제작·판매·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저작물을 발행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즉,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계약서 유형이다.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어떤 내용이야?

이 계약은 특정 저작물의 오디오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데 필요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거야. 즉,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응.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 권리를 등록하면,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10.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에서, 계약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

그렇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했어.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의미로 용어를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왜 중요한 거지?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둘 수는 없어서, 비교적 중요한 개념들로 한정해서 정의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들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거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11.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설정'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걸 말해. 쉽게 말해, 특정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지.

그럼 이 설정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

설정을 통해 특정한 배타적 권리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곧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발행사로 하여금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저작권법 시행령 26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거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저작권자가 다른 발행사와 중복 계약을 했을 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발행사가 저작물을 발행하는 걸 막지 못해.

등록은 필수적인 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에 필수적이진 않아. 등록이 없어도 발행이나 이용에 문제는 없어.

계약서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엔 이 조항이 필요 없어져. 등록 여부는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

**제5조 (배타적 이용)**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어?

발행사가 배타적발행에 따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즉, 발행사만이 그 저작물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게 되는 거지.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은 어떤 점이 중요해?

먼저, 제1항에서는 계약기간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해야 해.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만료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야 하는 거지.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반대로 더 이상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해지 통보 시한은 쌍방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

해지 통보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르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돼.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자동 연장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돼.

그러면 저작권자에게 해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네.

제4항에서는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해지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저작권자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제6조는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저작권법 제5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적당한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해지 통보에 관한 내용이다. 오디오북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또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시한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발행사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충분히 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라 '언제까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약이 없는 경우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을 9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을 언제까지 발행해야 해?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발행할지' 약속이 없으면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해. 여기서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은 실무에서 흔히 '완전원고'라고 불리는 거야.

그렇구나. 만약 완전원고를 주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해서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지.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권자 등에게도 출판사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

는 이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작자나 저작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

저작자나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해야 해. 발행사처럼 저작권자도 출판사에 완전한 저작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 만약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저작권자가 져야 해. 이게 제1항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야.

그럼 제2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제2항에서는 고지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어.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계약의 완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야. 이를 통해 양측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거지.

**제9조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가 인도한 원고가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낭독 범위는 원고 전체로 정하며, 다만 일부 발췌 또는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는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자가 저작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저작권자와 협의한 기일 내에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 기일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항에서는 원고(저작물) 전체의 오디오북 낭독이 아닌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발행자가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자에게 원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오디오북 제작 일정은 어떻게 정해져?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받은 후, 저작권자와 협의한 기일 내에 오디오북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기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완전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해.

원고의 일부만 낭독하거나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오디오북 낭독이 원고 전체가 아닌 일부 발췌나 요약일 경우, 발행사가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이야.

**제10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①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비스 채널 : B2C (  ) / B2BC (  ) / B2B (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 스트리밍 (  ) / 뉴미디어 (  )
■ 유료 여부 : 유료 (  ) / 무료 (  )
■ 판매 방식 : 구매 (  ) / 대여 (  ) / 구독 (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 요약본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가격,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서비스 채널을 비롯하여 서비스 방식, 유료 여부, 판매 방식, 부가 서비스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그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 등이 있을 경우 쌍방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디오북의 판매 가격, 발행 시기, 홍보·광고, 판매 방법 등의 결정은 발행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항은 홍보·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 또는 공연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물 등 홍보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10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돼?

오디오북 발행 등에서 서비스 채널, 서비스 방식, 유료 여부, 판매 방식, 부가 서비스 등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있어.

그렇구나. 다른 이용 방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

추가적인 이용 방식이 있을 경우, 쌍방이 협의해서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디오북의 판매 관련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오디오북의 판매 가격, 발행 시기, 홍보·광고, 판매 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발행사가 결정해. 필요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어.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송신하거나 공연할 때는?

그런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리고 홍보 과정에서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제11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에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보호와 저작권 표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9조 해설 참조)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의 존중'은 어떤 내용이야?

발행사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돼. 또한, 저작권 표지를 올바르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고 있어.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매출액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상호 합의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출판물과는 달리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분쟁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오디오북은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해 정하는 게 합리적이야.

매출 현황 통보와 지급 방식은?

발행사는 정해진 기간마다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해. 저작권자는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되어 있어.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 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3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3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선급금은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매출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하였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선급금은 계약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이야.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매출에서 지급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14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저작권법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4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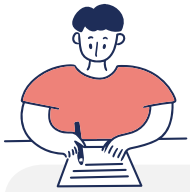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가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45조 1항과 제62조 1항의 차이가 뭐야?

제45조 1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면에 제62조 1항은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러면 저작재산권자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배타적발행권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하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뭐야?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발행사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원할 경우,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15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

제15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에 관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곧 여러 가지 저작물의 형태를 원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제1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다. 특정 오디오북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오디오북이나 정기간

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고 제3자의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은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2차적저작물'이 뭐야?**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등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을 말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1항은 뭐라고 돼 있어?**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어. 발행사가 요청을 받으면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해.

**저작물 자체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요청이 있으면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알려야 해.

**실무적인 부분은?**

2차적 이용에 대한 실무는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해.

**제16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는 **'계약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제16조는 '계약 변경'에 대한 내용이라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

계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7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제17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이행 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기피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행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발행사가 발행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도산 등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부터 발생해.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성범죄(성희롱, 성폭력 등) 발생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알리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제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아울러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8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7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18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 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8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이라던데, 어떤 점을 다루고 있어?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걸로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18조에서는 성희롱 등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 거야.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조항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계약이행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에는 쌍방이 책임을 면제받게 돼. 불가피한 재난으로 서로 잘못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후의 조치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0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0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발행사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계약 종료 후 쌍방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제20조 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어.

계약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해?

계약 종료 후 쌍방이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거지.

**제21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1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처럼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1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 적용돼?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기준을 제공하는 거지.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22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소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즉,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지정하게 되는 거지.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약사항의 표 형식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의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 2장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02

#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대상저작물 :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오디오북 발행사 _____(이하 '발행사'라고 함)과(와) 오디오북 유통사 _____(이하 '유통사'라고 함)는(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납품하는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와 유통사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 방식에 의한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 오디오북 콘텐츠 판매와 유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를 위해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오디오북 콘텐츠 판매와 유통을 위해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야?

오디오북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를 맺기 위해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오디오북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거지.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주로 오디오북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제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발행사와 유통사가 협력해서 오디오북을 효과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디오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네.

그래서 계약서에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해두고, 양측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야.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6.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2조는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계약 이행 시 상호 이해를 돕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고, 비교적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정의를 두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꼭 필요한 용어들만 선정한 거지.

제3조는 **'권리와 보증'**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권한 보유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1항은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항이다.

제2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이 계약에 의해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오디오북의 불법적인 이용과 그에 따른 발

**제3조 (권리와 보증)**

① 발행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로서 오디오북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을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복제방지장치 등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사와 유통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디오북의 검색과 이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시 불법적 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통사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제4항은 유통사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오디오북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제5항은 오디오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발행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제시한 것으로, 오디오북의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비용의 청구와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유통사는 발행사가 그 판매 및 구독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권리와 보증'에 관한 조항이네.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줄래?

발행사가 오디오북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제2항은 유통사가 이 계약으로 오디오북을 복제, 전송해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얻는다는 내용이야.

불법 이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유통사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디오북 이용 촉진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 이용 촉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5항은 발행사가 오디오북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사가 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년 _월 _일부터 ___년 _월 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임에도 발행사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에게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계약 만료일 전 서면통지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서면 통지 기한과 몇 년씩 자동 연장될지는 상호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은 발행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에서, 발행사와 저작권자와의 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 등이 종료된 경우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서비스 제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제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는 저작권자와의 계약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유통사와의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4조는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에 관한 내용이라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 만료일 전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 통지 기한과 자동 연장 기간은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해.

발행사와 유통사 간 계약기간 중에 발행사와 저작권자 간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

발행사와 저작권자 간의 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해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계속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는 저작권자와의 계약기간 및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유통사와의 계약을 진행해야 해.

제5조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 계약의 내용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계약의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더 이상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계약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상대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항을 통해 계약 종료 __개월 전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제2항에서는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판매나 구독서비스를 위해서 제3자에게 오디오북을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기간 내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된 오디오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에 관한 권한이 유효함을 명시하였다.

**제5조 (계약의 갱신)**

① 발행사와 유통사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을 추가로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기간 이내에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한 오디오북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서면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봐. 그래서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해. 계약 종료 몇 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할 수 있어.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면 어떻게 돼?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종료되면, 발행사가 오디오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계약기간 내에 판매된 오디오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그 이용 권한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6조 (오디오북의 서비스)**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비스 유형

| 채널 | B2C ( ) | B2BC ( ) | B2B ( ) |
|---|---|---|---|
| 판매방식 | 구매 ( )<br>대여 ( )<br>구독 ( ) | 자동반출 ( )<br>아웃링크 ( ) | 구매 ( )<br>대여 ( )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스트리밍 ( ), 뉴미디어 ( )

■ 유료 여부 : 유료 ( ), 무료 (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요약본 ( )

② 유통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유통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와 유통사는 사전에 결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유통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는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서비스 채널과 채널에서의 판매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유료와 무료의 선택 그리고 미리듣기나 요약본과 같은 부가 서비스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유통사와 발행사 쌍방의 협의를 통해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 광고, 판매 방법 등에 대해 유통사가 우선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발행사와 결정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발행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저작자나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오디오북의 서비스 채널과 판매 방식, 유료와 무료 여부, 미리듣기나 요약본 같은 부가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처리해?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유통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디오북의 홍보나 판매 방법은 누가 결정해?

유통사가 홍보, 광고, 판매 방법 등을 우선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발행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사가 홍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반드시 발행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저작자나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해.

**제7조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① 발행사는 유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 등을 유통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유통사가 특정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오디오북을 사전에 상호 합의한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유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납품한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한다.

④ 이용료의 정산은 ___개월 단위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 말일까지 발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___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는 **'오디오북의 주문·납품 및 정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가 유통사의 오디오북 판매에 있어 필요한 정보 일체에 대해 사전에 미리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유통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오디오북 서비스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관련 오디오북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6조에서 규정한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정산할 매출액의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디오북의 주문·납품 및 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오디오북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럼 주문과 납품은 어떻게 이루어져?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주문하면, 발행사가 그 주문에 따라 오디오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매출 정산은 어떻게 돼?

오디오북의 판매나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을 쌍방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발행사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산 절차는?

정산할 매출액의 최소 금액, 지급 방법,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제8조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 보고 등)**

①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료 등을 발행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 상호 합의한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는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보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정산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오디오북의 공급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보고'는 어떤 내용이야?

정산보고의 투명성을 위해 오디오북 발행사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급 내역, 가격, 수량, 이용료 등의 상세한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매출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어떻게 해?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리고 발행사는 이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

② 유통사는 이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___ 개월간 이 계약 오디오북의 공급과 이용에 관련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오디오북 발행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오디오북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 후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행사에게 자료 요청의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① 이 계약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통사는 해당 오디오북에 대하여 판매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유로 유통사가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유통사의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발행사는 권리 소멸 __개월 이전에 이 사실을 유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유통사는 ___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 소멸 이후에 오디오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사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는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손해배상은 저작권법에서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 등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

해배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2항은 이 계약의 제3조 제1항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유통사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구독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통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오디오북 판매와 구독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발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범위를 유통사의 손해액 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통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임을 규정하였다.

제4항은 발행사의 오디오북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발행사는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가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효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유통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업무가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소멸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권리 소멸에 대한 사실을 통보했으나 유통사가 권리 소멸 이후에도 판매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유통사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발행사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라는데, 간단히 설명해 줄래?

제1항에서는 당사자 중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의 복제권이나 전송권 문제가 생기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유통사가 오디오북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사가 배상해야 해. 단, 유통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야.

발행사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는?

발행사가 권리 소멸을 유통사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발행사가 책임을 지게 돼.

**제10조 (면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유통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는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라던데, 자세히 설명해 줄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네?

그렇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면제해 줘.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 또는 유통사의 소속 임직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계약당사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2항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도로 인해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회사 정리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법인의 청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법인격의 변경이 발생했으나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자동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항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

'계약의 해지'는 어떤 내용이야?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 말해. 제1항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

맞아, 부도, 파산, 법인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

손해배상은 어떻게 돼?

해지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해.

성범죄 관련 내용도 있나?

응, 성범죄로 인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1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래?

성희롱 같은 피해를 당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하지만 계약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12조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정해두고 있어. 피해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절차를 마련한 거지.

제13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유통사는 바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유통사는 지체 없이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서비스 사용 중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쌍방 간 협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발행사는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오디오북의 사용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___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유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행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료 정산 방식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는 어떤 조항이야?

오디오북 유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유통사는 즉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서비스 사용 중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쌍방이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 경우 발생한 이용료는 상호 합의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4조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와 유통사 이외의 제3자가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이나 배타적발행권 그리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사와 유통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력하여 대처한다.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은 발행사와 유통사 외에 다른 제3자가 오디오북의 저작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또는 계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만약 제3자가 침해 행위를 하면, 발행사와 유통사가 협력해서 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야. 이를 통해 법적 조치나 필요한 대응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15조는 **'소송의 관할'**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15조 (소송의 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와 유통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발행사와 유통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1항에서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조정이 결렬되거나 한쪽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서 소송을 진행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야.

제16조는 **'부칙'**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서에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1호에서는 계약서에 미처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쌍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호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오디오북이 다른 형태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역과 세부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 별첨 자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부칙)**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2.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오디오북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해당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별첨> 자료로 계약서에 첨부한다.

'부칙'에 관한 조항은 계약서에 포함하지 못했거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

계약서에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쌍방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관련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디오북이 다른 형태로 거래될 경우는?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오디오북이 다른 형태로 거래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역과 세부적인 거래 조건을 별첨 자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약사항의 표 형식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유통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는 제작사와 발행사가 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서명 날인하여 2통을 작성한다.

03

#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제작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배타적발행권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함에 있어 발행사와 제작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는 오디오북의 제작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다.

*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출판사)가 오디오북 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오디오북 제작에 관련된 계약서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계약서야?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받은 발행사, 즉 출판사가 오디오북 제작사와 맺을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야.

그러니까 출판사가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제작사랑 계약을 맺는 거네?

출판사가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유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활용해서 오디오북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 계약서를 통해 오디오북 제작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정하게 돼.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해서,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모든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중요한 개념들로 한정해서 정의했어.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다 다룰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한 거지.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 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년 _월 _일부터 ___년 _월 _일까지로 한다.

제3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오디오북 제작·납품·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오디오북 제작, 납품,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발행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율해서 정하는 거지.

제4조는 **'제작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작사가 발행사와 합의한 기간 안에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완성된 음원 파일을 인도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기일에 대해 별도 협의

**제4조 (제작사의 의무)**

① 제작사는 오디오북으로 제작 완료한 최종 저작물의 음원 파일을 ___년 _월 _일까지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작사의 의무'에 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제작사가 발행사와 합의한 기간 내에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완성된 음원 파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발행사와 협의해서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디오북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 제작 과정의 세부 사항을 발행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 제작물의 이용권은 발행사에게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완성 작품의 배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작사가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행사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면?

발행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사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경우, 제작사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② 제작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을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의 이용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④ 제작사는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이 이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배포 및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작사는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한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오디오북의 제작 과정에서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 제작물 이용권이 발행사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며, 제4항은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가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5항은 해당 저작물에 대해 발행사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5조 (발행사의 의무)**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제작 방향,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제작 시 낭독 범위는 도서 내용 전체(완독)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제작물의 검수 과정 중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발행사는 제작사에게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작 방법,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에 있어서 제작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낭독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완독이 아닌 일부 발췌나 요약본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발행사의 의무'에 대한 조항은 뭐야?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발행사가 제작사에게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제작 방법,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에 대해 제작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낭독 범위에 대한 내용은?

오디오북을 완독하지 않고 일부 발췌나 요약본 제작이 필요할 경우,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검수 과정에서 발행사가 제작사에게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소지가 없도록 발행사가 저작권자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에서는 오디오북 제작물의 검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제작비용'**에 관한 조항이다. 제작에 관한 계약서 체결 이후 쌍방 간 결정한 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검수가 완료된 오디오북을 제공한 이후 합의한 기일 이내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6조 (제작비용)**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___일 이내에 잔금 _____원을 제작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작에 관한 계약서에서 선급금과 잔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 체결 후, 쌍방이 결정한 기일 내에 발행사가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그리고 최종 검수가 완료된 오디오북을 제공한 후에는, 합의한 기일 내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7조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는 **'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변경 시에는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제7조 '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에서는 계약을 변경할 때 반드시 쌍방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 계약의 어떤 내용이든 변경하려면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거야.

제8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와 제작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__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은 발행사와 제작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발행사 또는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래. 제1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바로 해지하거나 해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지. 이는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미가 있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행을 독촉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해지는 계약의 이행 의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서 원상회복과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거야.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9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8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9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9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제8조 제4항에서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계약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완전히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9조에서는 피해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야.

**제10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제작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제'**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0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제'에 관한 조항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에서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맞아, 그런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그 후에 필요한 조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11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이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__년 동안 유효하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면 안 돼. 이 조항은 계약 관계가 끝난 후에도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야.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2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내용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약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인 해석 원칙을 따르는 거지.

제13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행사와 제작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13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인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

조정이 결렬되거나 한쪽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제1심 법원을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약사항의 표 형식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는 제작사와 발행사가 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서명 날인하여 2통을 작성한다.

# 2장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04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

이 계약은 성우와 같은 실연자와 발행사 사이에 체결되는 거라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는 거야?

이 계약은 실연자가 낭독한 오디오북 저작물을 발행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즉,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에 대한 조건과 범위를 정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이용 허락의 범위, 보상, 이용 기간, 그리고 사용 조건 같은 것들이 명시돼. 이렇게 해서 실연자와 발행사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

*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

**실연자의 표시**
성 명 : 이명(예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이하 '실연자'라고 함) ____과(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오디오북을 제작함에 있어 위 저작물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와 오디오북 발행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오디오북 저작물을 낭독하게 될 성우 등 실연자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4.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인데,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해서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모든 용어를 다 정의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들만 정의해 두고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거지.

제3조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자기가 참여한 실연 저작물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는 실연 저작물에 대한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야.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권과 비슷하게 중요한 권리라서, 실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실연자가 권리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걸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제4조 (발행사의 의무)**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실연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완성된 오디오북에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발행사는 완성된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는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위 저작물의 원고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디오북 제작 시의 제반사항(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완성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홍보나 광고에 있어서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발행사가 오디오북을 제작할 때 실연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

발행사는 실연자에게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원고를 제공해야 해. 그리고 오디오북 제작 과정에서 녹음 방법이나 범위, 배경음악 같은 제반 사항도 결정해서 실연자에게 통보해야 해.

그렇구나. 실연자와 관련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었어?

있어. 발행사는 오디오북이 완성된 후,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 그리고 홍보나 광고에서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점도 명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연자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거구나?

응,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면서도,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

제5조는 **'실연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발행사와 합의하여 정한 기일 이내에 녹음을 완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 별도 협의를 통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결과물에 대해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디오북 기획 취지에 맞도록 ____년 __월 __일까지 녹음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녹음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연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연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실연자는 오디오북 저작물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발행사와 합의한 기한 안에 녹음을 완료해야 해.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기한을 변경할 수도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수정이나 보완 요청은 어떻게 되지?

발행사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면, 실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고 다시 작업해야 해.

**제6조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정산 방식 | 일괄 (  ) | 일괄+사용료 (  ) | 사용료 (  ) |
|---|---|---|---|
| 저작인접권 사용료 | - | 일괄 + 매출액의 ___% | 매출액의 ___%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 계약 이후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오디오북 제작을 완료하여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잔금 _____원을 실연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사용료' 혹은 '사용료'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실연자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실연자가 제1항에서 선택한 정산 방식에 따라 선급금 혹은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방법에 대해 발행사와 협의된 내용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네.

맞아. 제1항에서는 실연자가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러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는 건데?

제2항과 제3항에 보면, 실연자가 선택한 정산 방식에 따라 선급금이나 사용료 지급 방법을 발행사와 협의해서 정해 주기로 되어 있어.

제7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6조 제1항에서 선택한 정산 방식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해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 제2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2항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며, 자동 연장에 여부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 제1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실연자는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저작물로 제작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②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사가 보유하는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발행사 또는 실연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발행사는 실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건데, 제6조 제1항의 정산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

만약 실연자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면,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발행사에게 양도한다고 해.

그럼 이 경우 제2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제2항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 이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하고, 자동 연장 여부도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제1항이 적용되면 제2항은 필요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제8조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홍보나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지만, 실연자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으며, 실연자는 발행사의 서면 승낙 없이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발행사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디오북의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어?

오디오북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발행사에게 있다고 규정해. 그래서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하고 싶으면 발행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

그렇구나. 그럼 제2항은 어떤 내용이야?

제2항에서는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 송신,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단, 이런 활동이 실연자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제9조 (양도 금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조는 **'양도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실연자와 발행사 모두 쌍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9조는 '양도 금지'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 조항의 핵심은 뭐야?

실연자와 발행사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걸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약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는 거야.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실연자와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___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실연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하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 계약의 어느 한쪽이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구나.

법적으로도 이행을 독촉한 후에야 계약 해지가 가능해. 만약 독촉했는데도 이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해지하면 앞으로의 이행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엔 원상회복과 반환 의무도 발생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계약 해지나 해제를 초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맞아. 그리고 추가로 제5항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10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1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1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0조 제5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성희롱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그게 피해 구제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다는 거구나?

응. 그래서 제11조에서는 피해를 실제로 어떻게 구제할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거야. 계약 해지나 해제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나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제12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2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실연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조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서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재난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각자가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협의해서 정해야 해.

제1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으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이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__년 동안 유효하다.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이야?

이 조항은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적인 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는 거지?

정확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비밀이나 개인 정보를 지키고,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14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제14조는 분쟁 해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제1항에 따르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조정이 잘 안되거나 누군가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제2항이 적용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 어떤 법원에서 제1심을 진행할지 정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어.

제15조는 **'부칙'**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계약서에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이 본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에 특약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부칙)**

①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약상의 내용이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제15조는 계약의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항목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계약서에 빠진 부분이나 애매한 건 어떻게 처리해?

그런 건 쌍방이 합의해서 특약을 만들 수 있고, 별도 합의서로 변경할 수 있어.

그럼 특약이 본 계약과 충돌하면 어떻게 돼?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약사항의 표 형식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계약서 유형은 설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3통이 아닌 2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기태(1999),『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채.

김기태(2013),『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기태(2019),『출판실무와 저작권』, 서울:화산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 작권법 해설』,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 자료』,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이규호(2010),『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임원선(2012),『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허희성(1988),『新著作權法逐條槪說』, 서울:汎友社.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표준계약서 Q&A

**Q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지만 오랫동안 절판상태에 있는 책의 개정판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자동갱신조항 등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A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 조항 중에 "계속출판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출판에 관한 권리를 얻어냈다면 최소한 해당도서가 서점에서 항상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절판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출판권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갱신조항은 그 효력의 상호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문제이지만, 새로 계약한 내용의 정당성과 함께 절판 상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저작권자로 하여금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하고, 개정판 출간을 진행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 중에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작권 중개 에이전시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팔리지 않은 번역도서는 폐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행 저작권법 제61조에 따라 "출판권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남은 출판물을 판매에 의한 방법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特約)이란, "출판권자는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재산권자(복제권자)와 이용권자(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출판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출판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부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로서의 인세(저작권 사용료)를 복제권자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출판계약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출판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1,500부의 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이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어느 저자와 출판계약을 맺고 약속한 날짜에 원고를 받았으나 원고의 수준이 본사 기획의도와 맞지 않아 출간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일단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차적인 책임은 출판사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저작자 관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뜻이며, 스스로 선택한 저자의 불성실성 또는 자질 미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므로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으며, 왜 그러한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 또는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부 고시 출판권설정계약서에서는 완전원고에 대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합의에 실패하게 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국내에서 출판된 도서의 저자가 계약기간 중에 출판사와 상의 없이 해외 번역판을 냈다면 국내 출판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인 출판계약은 국내에 한정하여 우리 국어로 출판하는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국내 출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통상적인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재산권 중 인쇄방식에 의한 '복제권'과 출판사 나름의 마케팅 노력을 바탕으로 한 '배포권'의 일부가 허용된 형태이지요. 따라서 국내 출판사와는 상관없이 저자가 외국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해도 무방하며, 만일 출판권설정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를 출판사에 위임한 경우에는 국내 출판사가 저자와 조건을 협의하여 외국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출판사에서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 특정부분만 모아 새로운 책을 내려고 할 때 다른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A 이른바 '자기표절'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자기가 저작권자인 동시에 침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기존 도서와 많이 겹칠 경우 출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왕에 나온 책들의 시장수요를 해친다면 저작권 침해 이전에 출판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이 있는데 저자의 전문성이나 지명도 및 마케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자 표기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A 저작자에게는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집니다. 곧 양수인이 양도받은 것은 저작재산권이므로 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원저작자의 양해가 없는 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출간하려는 저작물의 특성과 함께 왜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저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지 원저작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부담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못지않게 저작인격권 또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이미 없어진 출판사에서 출간된 지 70년이 지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출판계약을 맺은 다음 다시 편집해서 책을 내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 출판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출간 시기의 문제는 그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재산권 유효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를 기준으로 기산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저작재산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외국도서의 한국어판 출판계약을 맺고 번역서를 내려고 하는데 번역서에 원서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달아도 괜찮을까요?**

A 제호란 저작물의 제목을 일컫는 말로서 저작물의 내용을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면 저작자에게는 사실상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만을 위해 제호를 무단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결국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도 엄연히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유지권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원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이용하려면 당연히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취지에만 집착하여 임의로 새 제목을 정해서 이용하는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침해 및 번역출판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다면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맺은 책의 경우 별도 계약 없이 출판사에서 오디오북을 제작해도 괜찮을까요?**

A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맺으면서 저작물의 이용조건과 범위와 관련하여 '오디오북'이 포함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일반적인 전자책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오디오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중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오디오북 관련 표준계약서 유형들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알맞은 계약서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현행 정부 고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이미 출판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유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출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유형의 출판 관련 계약서가 이용되어 왔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만들어 보급한 것도 있고 개별 출판사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유형의 계약서들은 대부분 출판계에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 단체와 협의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보니 일부 불공정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공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고시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그대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얼마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최소한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 교환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들도 제시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한 것이 정부 고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정부표준계약서에서 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 및 그 효력을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저작물에 관한 이용을 허락받은 이용권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저작권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 여부 등을 위한 통지라든가, 2차적저작물 작성을 포함한 부차적 권리에 관한 위임사항 등을 미리 저작권자와 조율하는 것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저작권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서일대학교 교수)

* 가나다 순 박찬수 (책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박사)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교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24. 10. 31.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www.kpipa.or.kr

**기획** 출판정책연구실

**편집·제작** (주)늘품플러스